

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1호

BUDGET AND POLICY

일자리 정책 : 예산과 입법과제

2009. 2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팀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 1 호

일자리 정책 : 예산과 입법과제

2009. 2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팀

□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발 간 사

글로벌 경제위기가 국내에도 빠르게 파급되면서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기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총 10만 3천명 감소하였지만, 구조를 보면 임시직·일용직·자영업자 등의 일자리 감소가 40만여명에 이르러, 취업 취약계층의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경제위기에 따른 대규모 실업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부양과 일자리대책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적시성 있는 긴급 지원책이 요청되며, 더 나아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보하도록 재정지출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의정 친화적 사안을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를 「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1호로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제1장과 제2장은 고용동향과 구조적 특성, 그리고 일자리 지원 예산을 분석하고, 제3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일자리 관련 법률안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제4장은 외국의 고용정책동향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이를 종합하여 일자리 정책에 관한 재정의 역할과 입법과제를 제언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국가의 주요 정책현안과 해외사례를 분석한 「예산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진력하는 의정 활동을 밀착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가 당면한 일자리 문제와 국민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재정과 입법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응을 해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2월 26일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

목 차

요 약 / 1

I. 총 론 / 11

- 1. 분석의 주안점 11
- 2. 최근 경제 및 고용 동향 13

II. 일자리 예산과 문제점 / 22

- 1. 예산 현황 22
- 2. 문제점 28

III. 일자리 관련 법률안 현황 / 33

- 1. 총 괄 33
- 2. 법률안 분석 35

IV. 해외 정책동향과 시사점 / 51

- 1. 총 괄 51
- 2. 해외 정책동향 55

V. 정책 제언 / 67

- 1. 긴급고용대책: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단기 일자리’의 양적 확대 67
- 2. 재정지출의 방향성 정립을 통해 분야별로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69
- 3. 교육·녹색성장 분야 등에 대한 투자로 ‘좋은 일자리’ 창출기반 확충 71
- 4.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72
- 5.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74

참고문헌 / 76

표 목차

[표 1] IMF 경제전망	14
[표 2] 2009년 경제 전망	15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	16
[표 4] 성별·연령별 실업률 추이	17
[표 5] 성별·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19
[표 6] 2009년 대졸자 취업 전망	21
[표 7] 2009년도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및 지원대상자 수 현황	22
[표 8] 유형별 주요사업 예산 현황: 2008~2009년	24
[표 9] 2009년도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및 지원대상자 수: 부처별·유형별	26
[표 10] 2009~2012년간 녹색뉴딜사업 재정소요 및 일자리 창출효과(추정)	27
[표 11] 일자리 지원의 유형별 제·개정 법률안 사례	33
[표 12] 주요 선진국의 최근 경제상황과 고용대책	54
[표 13] 2009년 경제위기에 대응한 미국의 고용대책	56
[표 14] 일본의 고용대책 사례: 주요사업 및 일자리 종류	60
[사례 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사례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사례 3]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사례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사례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사례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사례 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사례 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사례 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사례 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사례 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사례 1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사례 1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사례 1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사례 15] 「저소득층 취업지원에 관한 법률안」	46
[사례 16]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사례 17]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사례 1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사례 19] 「일자리영향평가법안」	49
[사례 20]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50

그림 목차

[그림 1]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추이	14
[그림 2] 취업자 및 실업자 증감 추이	16
[그림 3] 실업급여 신청자 및 실업급여 지급액 추이	20
[그림 4] 일자리 부문 입법과제와 기대되는 효과	34

요 약

I. 총 론

- 최근 경제전망에 의하면,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침체하면서 ‘일자리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
 - 정부 수정 전망(2. 11): 2009년 경제성장률 3% → -2%,
일자리 10만개 창출 → 20만개 감소

- 2009. 1월 기준으로, 취업자 수(2,286만명)는 전년동월대비 총 10.3만명 감소하였지만, 구조를 보면 특히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실업 증가가 주목됨
 -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전년동월대비 28.7만명 증가한 반면, 임시 및 일용직 26.7만명 감소,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12.3만명 감소
 - 여성 일자리가 남성보다 큰 폭으로 감소(남성 1.9만명, 여성 8.4만명 감소)
 - 그러나 50대 여성 일자리는 늘어나(실업률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
사회서비스일자리 등 주부들의 ‘돌봄 노동’ 내지 ‘틈새 직업’ 부각
 - 실업급여 신청자 수와 급여지급액은 12.8만명 및 2,761억원(고용보험 도입 이래 최고)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36%, 26% 증가

- 분석의 주안점
 - 첫째, 고용동향과 구조 및 일자리지원 예산분석 둘째, 국회에 계류 중인 일자리 관련 법률안 사례분석 셋째, 해외 정책동향과 시사점 분석을 종합하여, 국회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재정 및 입법 정책과제를 모색함

II. 일자리 예산과 문제점

1. 예산 현황

-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은 2009년 4조 5,489억원 규모로 19개 부처·청에서 수행 되는데,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은 32만명(2.7조원)에 불과하며, ‘인력 양성’이 430만명(1.8조원) 수준
 - 2009. 1월말 기준 예산집행실적(0.8조원)은 계획대비 154%로, 예산 확대 필요

[표] 2009년도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과 대상자 수

(단위: 억원, 천명, %)			
	예 산 (비 중)	대상자수 (비 중)	비 고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일자리	12,366 (27.2)	126 (2.7)	전년대비 예산 18% 증가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12,309 (27.1)	30 (0.6)	
단기 일자리	2,557 (5.6)	165 (3.6)	청년인턴(575억원, 신규) 노인일자리(1,166억원) 22% 증가
소 계	27,231 (59.9)	321 (6.9)	
[인력 양성]			
직업능력개발	16,087 (35.4)	4,259 (92.1)	
미래산업 청년리더	1,155 (2.5)	13 (0.3)	전년대비 예산 103% 증가
글로벌 청년리더	873 (1.9)	15 (0.3)	전년대비 예산 94% 증가
여성 다시일하기	143 (0.3)	15 (0.3)	
소 계	18,258 (40.1)	4,302 (93.1)	
합 계	45,489 (100.0)	4,622 (100.0)	

주: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점검을 위한 일자리사업 분류기준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 이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국가사업으로 ‘녹색 뉴딜사업’¹⁾을 들 수 있음
 - 동 사업은 11개 부처·청의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을 포함하며, 2009년에는 4.4조원을 투입하여 9.3만개 일자리 목표
 - 각국은 환경·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여, 경제위기 극복과 더불어 지속성 있는 ‘새로운 일자리’(녹색 일자리) 모색

1) 2009~2012년간 총 50조원 투자, 96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

2. 문제점

- **당면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사업 예산 확대 미흡**
 - 인력양성을 위한 「글로벌 청년리더양성」, 「미래산업 청년리더양성」 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은 각각 94%와 103%인 반면, 단기 일자리 효과가 큰 「사회서비스일자리」와 「노인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각각 18%와 22%에 불과

- **취업 취약계층의 주요 일자리인 돌봄서비스 등의 예산규모 과소**
 - 중·장년층 여성의 주요 일자리인 산모신생아돌보미 등 각종 돌봄서비스(2,780억원, 4.5만명)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대비 6.1%, 총 지원대상자 수 대비 0.1%에 불과
 - 노인돌보미(521억원)와 가사간병도우미(536억원) 예산은 각각 전년대비 21%와 10% 감액

- **노사의 ‘일자리 나누기’ 실천노력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및 제도개선 미흡**
 - 일자리 나누기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583억원),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35억원), 교대제전환지원금(61억원) 등 **3개 사업(679억원)에 불과**
 - '고용유지지원금'은 최근 신청건수 급증 추이를 감안할 때 예산 부족이 예상되며, 지원요건 완화 등의 제도개선도 미흡
 -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과 '교대제 전환지원금' 예산은 각각 전년대비 65%와 55% 감액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지휘탑(control tower) 부재**
 - 19개 부처·청에서 분산 수행되는 사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의 신규 발굴, 사업별 예산배분 조정, 성과가 낮은 사업의 퇴출 등이 노동시장 여건과 수요에 맞게 총괄·조정되지 못하여 효과성 있는 사업 운영 미흡

-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일수록 일자리 수요는 많지만 대응 지방비 조달문제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움**
 - 사회서비스일자리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의 경우, 일부 지자체가 대응 재원 부족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거나, 타 복지사업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 발생

III. 일자리 관련 법률안 현황

- 2009. 2. 13일 기준으로, 일자리와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정부가 제출을 준비 중인 법률안은 일자리 유지·창출, 고용안전망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 교육·훈련, 새로운 제도 도입의 **4가지 유형에서 20개 사례**가 파악됨
 - **관련 법률안의 원활한 입법**은 직접적으로 보육교사, 성교육교사, 수화방송인 같은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주며, ‘사회적기업 육성’ 등은 고용시장에 촉매로 작용함으로써, 미흡한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효율 제고, 그리고 **틈새직종의 진입**을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효용 증대에 기여
 -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취업 취약계층 지원, 교육·훈련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입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 지원과 더불어 향후 재취업을 통한 자활 도모에 기여

[표] 일자리 지원 유형별 법률안 사례

유형	관련 법률안
일자리 창출 및 유지(1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취업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교육·훈련 제공(2)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자리 관련 새로운 제도 도입(2)	「일자리영향평가법안」,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주: 유형분류 시 복수로 포함되는 사례로 인하여, 총 사례수와 차이 있음.

IV. 해외 정책동향과 시사점

- 최근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각국의 경기부양과 일자리정책은 자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 소비 진작을 위한 한시적 감세,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 미국: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경기부양책은 전통적 사회간접자본 투자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 과학기술 지원, 의료, 교육분야에 중점을 두고, 안정적 고임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
 - 영국: 한시적 감세정책, 유연근로제(flexible working) 확대, 공공부문과 민간기업들의 제휴 협력을 통한 일자리 정보 소통, 그리고 디지털산업, 환경산업 등의 투자를 통한 지속적인 고용 창출에 역점
 - 일본: 1990년대 장기불황 시 도로·공항 건설 등의 투자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중앙과 지방정부에 채무만 증가시켜, 최근에는 노인·어린이 돌봄 등 사회서비스, 환경·저탄소 관련 일자리 창출 방향으로 전환

-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보다, 지역 상황에 맞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정부에 재정지원 강화 및 정책 자율성 확대
 - 미국: 주정부 재정부담을 완화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유지, 의료·교육에 대한 지출 삭감 방지, 주정부의 경기침체에 대응한 정책수립 탄력성 보장
 - 일본: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10개 부문 200여개 고용대책 사업례」(내각부 소속 긴급고용경제대책 실시 본부)를 발표하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우선순위 결정과 참여 유도

- ‘구인·구직 짝짓기’를 위해, 공공과 민간기업들의 제휴 협력 노력
 - 영국: 정부 주도로 ‘로얄 메일’, ‘테스코’(슈퍼마켓 체인) 등이 제휴하여, 잡센터(Job Centre)에 구인정보 제공 등을 통한 ‘전국 고용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및 실업자 조기취업과 교육훈련 제공

V. 정책 제언

1. 긴급고용대책: 재정지출 등을 통한 '단기 일자리'의 양적 확대

- 취업취약계층의 대규모 실업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단기 일자리를 양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주안점을 둬
 - 2009. 1월 기준, 임시직·일용직·자영업자 등의 일자리는 전년동월대비 40만개 감소하였으며,
 - 2009. 1월 중 일자리 예산 집행실적(0.8조원)은 계획대비 154%²⁾나 되어, 증가되는 일자리 수요에 비해 상당한 예산부족이 예상되므로, 사회서비스일자리 등의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지출 확대 필요

- 지출 확대 시, 기존사업비 증액 또는 신규 도입이 고려되는 일자리 사례
 - 청년 일자리: 공공기관 청년인턴제(행정인턴, 2009년 신규), 가정보육교사(법률안계류 중), 보조교사제(신규도입 제안)
 - 경기도 사례: 전문보육교사가 가정방문하여, 36개월 미만 아동을 1:1로 가정보육
 - 경력을 인정하는 보조교사제 도입을 통해 청년 일자리와 공교육의 내실화 도모
 - 숲가꾸기, 예술강사, 도서관 연장운영, 공공미술프로젝트, 문학창작지도, 디지털방송인력 및 디자인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 확대 검토
 - 저소득층과 중·장년층 여성 등이 취업 가능한 돌봄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일자리,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확대 등
 - 특히 50대 여성취업 증가는 가정의 실업을 보완하므로, 단기적일자리라도 충분한 일자리 공급이 필요하며, 노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간접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
 - 한시적으로 확대된 사업은 향후 경기가 호전되거나 목표충족 시 다시 본 위치로 환원(reversible)되도록, 예산사업 '일몰제' 적용 검토

2) 집행률: 창업활성화 용자(143%), 전직실업자 취업훈련지원(138%).

□ 입법 및 사회적 협력을 통한 지원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바람직한 입법은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제공에 활력 부여
- 정부(고용지원센터·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들이 협력하여 특히 청년 및 단기 일자리 등과 관련된 구인·구직 정보가 원활히 소통되도록 지원
 -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취업 1만명 프로젝트」(조선일보·기업은행 운영)인 '잡월드'(www.ibkcsjob.co.kr) 참여기관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로얄 메일, 테스코 등 제휴하여, 정부운영 '잡센터'에 구인정보 제공

2. 재정지출의 방향성 정립을 통한 분야별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한 재정투자는

- 첫째, 당면한 위기상황에서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청년·영세 자영업자·여성 등을 주 대상으로 적정규모의 재정을 시의성 있게 투입하여 일자리를 직접 지원하는 긴급고용대책과 관련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사회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저출산문제에 대응하여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한 투자,

그리고 세계 경제운용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한 신성장모델 선점과 이를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성 정립과 실행전략 필요

- 경기 침체기에는 고용불안으로 젊은 층은 결혼을 연기하고, 혼인부부는 출산을 연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혼인신고건수 등 각종 선행지표가 하락하여 세계 최저수준의 우리나라 출산율은 '1.0 쇼크'가 올 가능성에 대비 필요
-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에너지효율화, 과학기술, 디지털산업, 환경·저탄소산업 분야에 중점 투자

- 일본의 대규모 재정투자 경험에서 얻는 시사점은 '공공투자사업은 미래에 유익함이 창출될 때 성과가 있다'는 점임
 - 미래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SOC를 통한 일자리 효과는 건설 공사 시에만 국한될 우려
 - 미국의 경우, 건설업 지원을 위한 투자는 신규사업보다 학교·병원·교량 등의 보수사업에 치중
 - 일본 시마네현의 경우, 대규모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good jobs)는 대학, 해양관(Aquarium) 건립³⁾ 등을 통해 창출

3. 교육·녹색성장 분야 등에 대한 투자로 '좋은 일자리' 창출기반 확충

- 저출산 고령사회가 급속하게 진전되는 가운데 미래의 '좋은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하자면, 양질의 인적자원 육성과 녹색성장(green growth)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 의료산업 등에 대한 규제개혁과 개방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할 수 있음
- '녹색 뉴딜사업'은 11개 부처·청이 수행하므로, 부처별 연계사업의 역할분담, 적절한 훈련프로그램 등이 수반되어야 일자리 효과 극대화
 - 취업 취약계층을 '녹색 일자리'로 연계시키자면, 훈련 프로그램이 중요
 - 미국: 「녹색 일자리법」(The Green Jobs Act of 2007)을 통하여 국가에너지정책으로 인하여 취업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퇴직군인, 실업자, 저소득층, 전과자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 및 재생에너지산업 관련 기술훈련 실시
- 대규모 재정사업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해서는 정도(精度) 높은 사전조사를 통하여, 고용시장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예측성이 있는 일자리 효과에 기반을 두고 투자계획이 수립되도록 함
 - 일례로 '녹색 뉴딜사업'의 고용효과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등에 토대를 두고 추정

3) 일본 시마네현의 경우 그간 추진된 도로, 교량 등 많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시마네현 연간 예산의 2배인 110억불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많은 사업 중 하마다시에 건설된 해양관사업 등은 이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도시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줌(뉴욕타임즈, 2009. 2. 6일자 인터넷 기사).

4.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 '일자리 나누기' 실천 노력이 확산되도록, 제도개선과 재정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요건 완화와 지원금 상향 조정 필요
 - 임금삭감, 근로시간 단축(work sharing), 직무분할(job sharing) 등을 통해 노사의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하는 재정사업: 고용유지지원금(583억원),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35억원), 교대제전환지원금(61억원) 등에 불과
 - 공공부문의 바람직한 일자리 나누기 사례가 민간부문에 파급되도록 유도
 - 정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금융공기업 등 100여개 공공기관 신입사원 초임을 기관별로 최대 30%가량 삭감하고, 동 재원을 인턴고용 확대 등에 사용 계획
-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사례,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 등이 확산되도록 지원
 -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고용유지 사례
 - 하이닉스: 문 닫은 3개 공장 직원 1,000명 전환배치 및 신규채용 억제, 유한킴벌리: 정리해고 대신 기존의 3조 3교대제를 4조 3교대제로 변경(고용증가, 생산성 향상)
 -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
 - 현대 중공업: 정년(58세) 퇴직자중 88%인 513명을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임금은 종전의 80%), 린나이코리아: 임금피크제 도입해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
- 관련 법률안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유지 및 신규고용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교대제 전환 시 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정부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포함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 완화규정을 마련하여, 일자리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5.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 취약계층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고용보험(실업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실업급여 임의가입 고려 필요
 -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 미국: 실업급여 수혜기간을 추가로 최대 33주 확대하고, 주급여 300달러인 실업급여를 추가로 25달러 증액할 계획

- 취약계층에 대한 개별연장급여 수급기간 확대와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임의가입을 허용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응하는 국고지원 등 재원조달방안 필요
 - 실업급여 계정에 대한 국고지원: 2009년 200억원(모성보호지원)에 불과
 - 미국: 실업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주정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실업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은 최근 실업자 증가로 인한 지출확대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동 계정 사업인 ‘고용정책·직업훈련’사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따라 국민일반까지 포괄하므로 국고지원 확대 필요
 - ‘고용정책·직업훈련’사업을 위한 국고지원은 7,000억원 규모로, 고용보험기금의 동 계정에서 지출되는 사업비(1.8조원)의 약 1/3에 불과

I. 총 론

1. 분석의 주안점

- 최근 발표되는 경제전망 및 고용지표에 의하면,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침체하면서 ‘일자리 위기’가 현실화됨을 알 수 있음
 - 정부: 당초 예상했던 ‘2009년 경제성장률 3%, 일자리 10만개 창출’ 전망을 ‘성장률 -2%, 일자리 20만개 감소’로 수정1)
 - IMF: 2009년 한국경제 성장률 -4% 수정 전망
 - 2009년 1월 기준 취업자 수가 총 2,28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3천명 감소2) 하면서, 이를 반영하듯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12만 8천명, 급여 지급액은 2,761억원으로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최고 수준 기록3)
 - 2009년 1월 기준 공식실업률(통계청 발표)은 3.6%, 실업자 수는 84만 8천명이지만, 불완전취업자, 구직단념자 등 체감 고용사정을 반영한 대체실업률은 공식 실업률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추정4)
 - 2008년 기준5): 공식실업률 3.16%인 경우, 대체실업률 6.97%(취업준비자 포함시 9.23%, NABO 추정)

- 일자리는 개인과 가족에게는 생활의 문제이고, 경제·사회적으로는 안정과 성장을 위한 주요 사안이므로, 재정지출과 입법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 내는 과제는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한 대책부터 적시성 있게 시행하면서, 향후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기반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1) 기획재정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장관 취임 기자회견, 2009. 2. 10.

2) 통계청, 「2009년 1월 고용동향」, 2009. 2. 11.

3)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전산망(www.ei.go.kr).

4) 정상훈, 「청년층 고용현황과 일자리 창출」, 국회경제위기대응팀 발간시리즈 제5호, 대한민국 국회 2008. 12.

5) 2008년 1~10월까지 평균.

□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로 큰 고통을 받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층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실업 증가에 대처하여 일자리 제공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긴급처방 필요

- 2009년 1월 기준으로,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가 전년동월대비 각각 13.4만명 및 13.3만명 감소하였고, 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종사자는 12.3만명 감소

□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이 다음의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필요

첫째, 한국사회에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

- 보육과 교육비 부담이 출산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며, 특히 지난 외환위기 이후 출산율 저하가 심화되었음을 감안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개입 필요

- 합계출산율: 1997년 1.54 → 2002년 1.17 → 2005년 1.08 → 2007년 1.26

- 경기 침체기에는 고용불안으로 젊은 층은 결혼을 연기하고, 혼인부부는 출산을 연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2008. 11월 기준 혼인신고 건수(2.7만건)가 전년동월대비 20% 감소⁶⁾하는 등 출산율 선행지표가 하락하여, 합계출산율 '1.0 쇼크'가 올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있음

둘째,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경제 운용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에 대비하여, 한국 경제의 재도약 전략을 위한 선제적 투자와 이를 통해 선진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성장모델을 선점하는 방향

- 국가경제 전략: '수출 주도형' → '저탄소·녹색성장형'으로 전환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전략 수립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에너지 효율화, 과학기술, 디지털산업, 환경·저탄소 산업 분야에 중점 투자

6) 통계청 자료.

□ 이러한 배경에서 본 분석은

첫째, 최근의 경제 및 고용 동향과 정부의 일자리 지원 예산현황을 분석하고,

둘째, 국회에 계류 중인 일자리 및 고용안전망 관련 법률안 사례를 분석한 후,

셋째, 경기부양과 일자리 관련 해외 정책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람직한 재정의 역할과 시급한 일자리대책,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포함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입법 정책적 과제를 제언함

2. 최근 경제 및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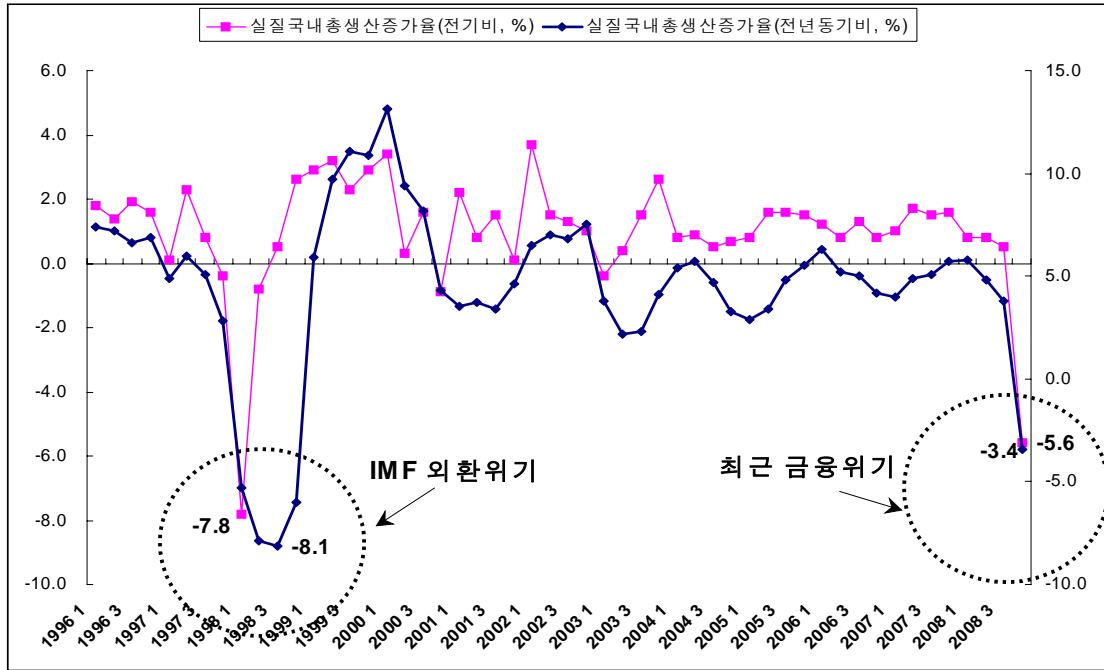
가. 최근 경제 동향

□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5.6% 감소(전년동기대비 3.4% 감소)로 외환위기 기간인 1998년 1/4분기 -7.8% 이후 최저치 기록

○ 2008년 성장률(전기대비, %): 0.8(1/4분기) → 0.8(2/4) → 0.5(3/4) → -5.6(4/4)

□ IMF는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2009년 -4%로 성장이 위축된 후, 2010년에는 +4.2%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

[그림 1]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표 1] IMF 경제전망

(단위: %, %p)

전망시기	2008년 전망		2009년 전망		2010년 전망
	08.11월	09.1월	08.11월	09.1월	09.1월
세 계	3.7	3.4	2.2	0.5	3.0
미 국	1.4	1.1	-0.7	-1.6	1.6
유 로	1.2	1.0	-0.5	-2.0	0.2
일 본	0.5	-0.3	-0.2	-2.6	0.6
중 국	9.7	9.0	8.5	6.7	8.0
한 국	4.1	2.5	2.0	-4.0	4.2
아시아 신흥경제국	3.9	2.1	2.1	-3.9	3.1

자료: IMF, 「세계경제전망 수정자료」, 2009. 1. 29.

- 정부도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위축 등 대내외 여건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성장·고용 등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
 - 성장률 전망을 기존 +3% 내외 → -2% 내외로,
 - 일자리 수는 10만개 창출 → 20만개 감소로 수정

[표 2] 2009년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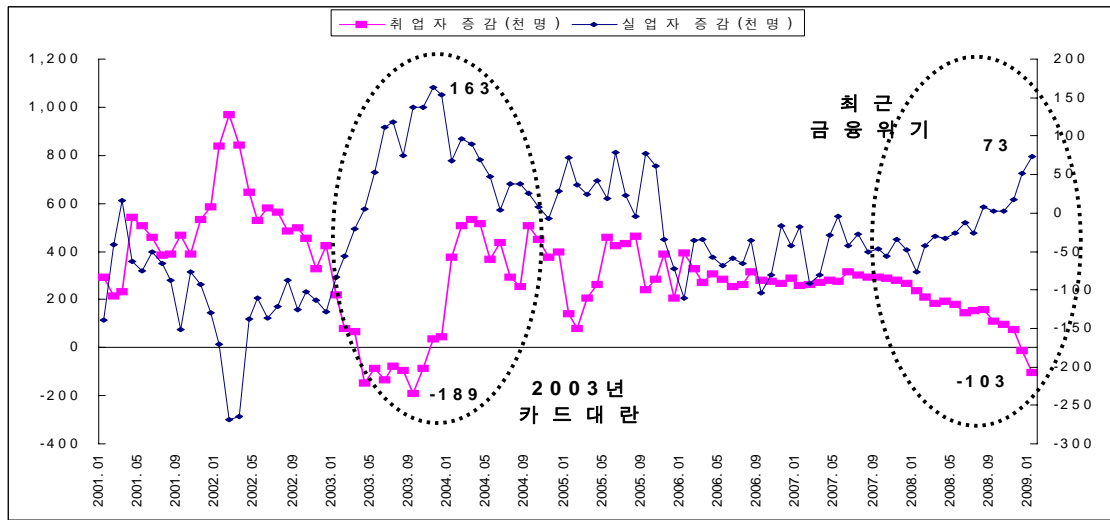
	당초 전망	수정 전망
■ 경제성장률	+3% 내외	-2% 내외
■ 취업자 증감	10만명 이상	-20만명 내외
■ 경상 수지	100억 달러 이상	130억 달러 내외
■ 소비자 물가	3% 내외	2% 후반

자료: 기획재정부,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기자간담회 자료」, 2009. 2. 10.

나. 최근 고용 동향

-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2009. 1월에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0.3만명 감소함으로써 일자리 감소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함
 - 일자리 마이너스시대는 2003. 9월 카드대란 이후 5년 2개월만인 2008. 12월에 진입(2008. 12월에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2만명 감소)
 - 실업자 수는 2008. 12월에 5.1만명 증가(전년동월대비 6.9% 증가)한데 이어, 2009. 1월에는 7.3만명 증가(전년동월대비 9.5% 증가)
- KDI의 2009년 전망(성장률 0.7%, 실업률 3.7%)과 정부의 최근 전망(성장률 -2%, 일자리 수 -20만개 감소)에 따라 당분간 일자리 감소 추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경기침체 → 일자리 감소 → 소비 감소 → 경기침체 심화 → 일자리 감소 심화의 악순환 발생)
 - 성장률 가정에 따른 일자리 감소 전망(한국노동연구원): 성장률 1% → 5.3만개, 0% → 9만개, -1% → 12만개, -2% → 18만개 감소

[그림 2] 취업자 및 실업자 증감 추이



주: 전년동월대비 기준임.

자료: 통계청.

- 특히, 경기한파에 따른 소비위축과 신규고용 부진으로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의 실업이 급증함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2009. 1월에 11.2만명 감소(전년동월대비 2.0% 감소)
 - 전체적으로 임금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만 28.7만명 증가(전년동월대비 3.3%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13.4만명 감소(전년동월대비 2.6% 감소), 13.3만명 감소(전년동월대비 6.3% 감소)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명)

	2007년		2008년		2009년
	12월	연간	12월	연간	1월
임금근로자	382	419	85	236	21
상용직	407	416	318	387	287
임시직	-58	29	-94	-93	-134
일용직	34	-26	-138	-57	-133
비임금근로자	-113	-137	-98	-92	-123
자영업자	-95	-86	-93	-79	-112
무급가족종사자	-18	-53	-5	-12	-12
전 체	268	282	-12	144	-103

주: 전년동월대비 기준임.

자료: 통계청.

- 경기침체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실업률(15~29세)이 2009. 1월에 8.2%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
- 남성 실업률은 2009. 1월에 4.1%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고, 여성실업률은 2.9%로 0.1%p 상승함
- 그러나 특이한 점은 50대 여성실업률이 1.4%로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하여, 최근의 실업대란 속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주부들의 ‘돌봄노동’ 내지 ‘틈새 직업’이 부각되고 있음

[표 4] 성별·연령별 실업률 추이

(단위: %, %p)

		2008. 1		2008. 12		2009. 1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남 자	15~29세	8.5	-0.8	9.4	0.3	10	1.5
	30~39세	3.5	-0.2	3.6	0.6	4	0.5
	40~49세	2.6	-0.3	2.4	0.3	2.5	-0.1
	50~59세	2.1	-0.9	2.8	0.7	2.9	0.8
	60세 이상	1.8	-0.3	1.7	0	1.9	0.1
	소 계	3.6	-0.5	3.7	0.3	4.1	0.5
여 자	15~29세	5.9	0.2	5.9	0.2	6.5	0.6
	30~39세	2.5	-0.5	2.2	-0.4	2.7	0.2
	40~49세	1.6	0	1.7	0.2	1.7	0.1
	50~59세	1.7	-0.1	1.6	0.5	1.4	-0.3
	60세 이상	0.8	-0.4	0.6	-0.3	0.8	0
	소 계	2.8	-0.1	2.6	0	2.9	0.1
전 체	15~29세	7.1	-0.3	7.6	0.3	8.2	1.1
	30~39세	3.1	-0.3	3.1	0.2	3.5	0.4
	40~49세	2.2	-0.2	2.1	0.2	2.2	0
	50~59세	1.9	-0.6	2.3	0.6	2.3	0.4
	60세 이상	1.4	-0.3	1.3	-0.1	1.4	0
	합 계	3.3	-0.3	3.3	0.2	3.6	0.3

주: 전년동월대비 기준임.

자료: 통계청.

- 상기 취업 취약계층의 실업이 급증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산업별 취업자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음
 - 전체적으로 서비스업의 고용부진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제조업·건설업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임
 - 제조업의 경우, 수출 감소, 내수위축 심화로 인해 2009. 1월에 전체 취업자 수가 12.7만명 감소하였고,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에도 전체 취업자 수가 1.7만명 감소함에 따라, 신규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이들 직종에서 청년취업자를 흡수하지 못함
 - 또한 임시·일용직을 많이 고용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도 주택경기 침체, 건설부문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2009. 1월에 취업자가 4.1만명 감소함에 따라, 임시·일용직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추세임
 -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2009. 1월에 취업자가 9.3만명 감소함으로써 자영업자가 동 기간에 많이 감소하는 원인이 되었음

-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여성일자리가 남성일자리보다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50대 여성들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
 - 여성 취업자 수는 2009. 1월에 남성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1.9만명 감소)보다 6.5만명이 많은 8.4만명 감소함
 - 50대 여성들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유는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0대 여성들이 경기에 덜 민감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임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09. 1월에 여자취업자가 12.8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 11월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중이 49.1%로 나타나는 등 경기 침체 후 감원된 일자리의 82%가 남성일자리이고, 여성들은 교육이나 건강관리 등 경기 변화에 덜 민감한 업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여성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는 것이라고 분석⁷⁾

[표 5] 성별·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명)

		2008. 1	2008. 12	2009. 1
남자	농림어업	-29	20	18
	제조업	-52	-47	-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237	29	-33
	건설업	-23	-42	-34
	도소매·음식숙박업	36	-46	-59
	금융 및 보험업	25	20	1
	교육 서비스업	-5	27	3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	-1	2
	소 계	161	4	-19
여자	농림어업	-35	-16	-3
	제조업	28	-86	-12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79	85	45
	건설업	15	-5	-7
	도소매·음식숙박업	-72	-17	-34
	금융 및 보험업	10	-26	-19
	교육 서비스업	18	21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4	134	128
	소 계	74	-16	-84
전체	농림어업	-64	5	15
	제조업	-24	-133	-12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316	113	12
	건설업	-8	-48	-41
	도소매·음식숙박업	-36	-63	-93
	금융 및 보험업	34	-6	-17
	교육 서비스업	13	48	2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6	133	130
	합 계	235	-12	-103

주: 전년동월대비 기준임.

자료: 통계청.

7) 뉴욕타임즈, 2009. 2. 6일자 인터넷 기사.

□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수출 대기업 및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인력감축 본격화 우려

○ 실업급여 신청자 수와 실업급여 지급액은 2009. 1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실업급여 신청자 수: 2009. 1월 12.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명 증가
(전년동월대비 36.2%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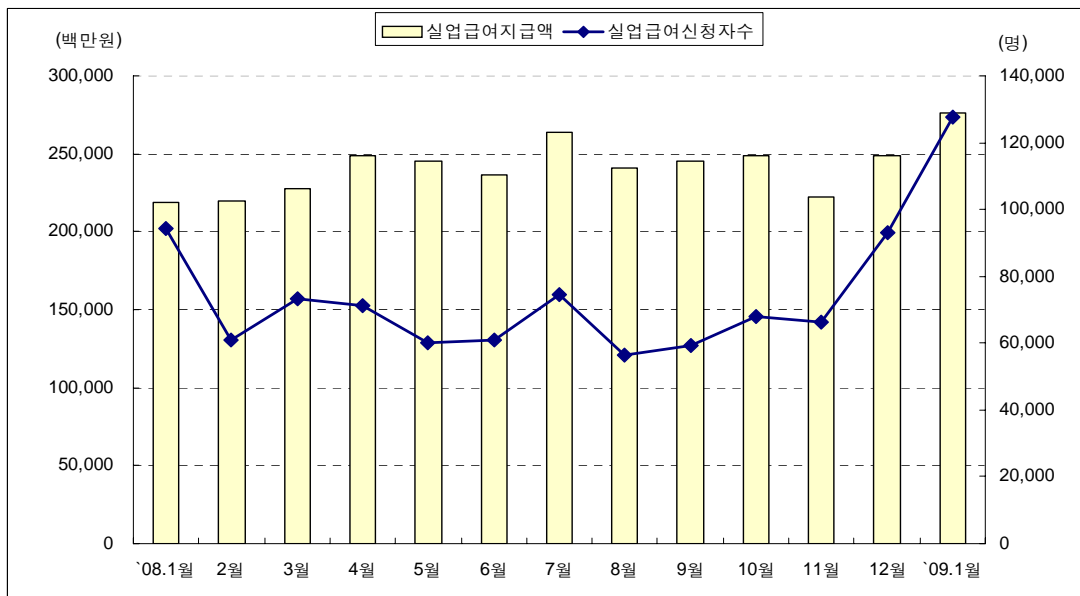
– 실업급여 지급액: 2009. 1월 2,76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71억원 증가
(전년동월대비 26.1% 증)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

2008. 10월 469건 → 11월 1,329건 → 12월 7,472건으로 급증

–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보다, 휴업·훈련·휴직·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그림 3] 실업급여 신청자 및 실업급여 지급액 추이



자료: 노동부.

□ 청년층의 경우, 취업자 감소가 확대되는 가운데 취업준비자 등 취업애로계층은 101만명 수준(2008. 12)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2009. 2월 신규 대졸자 56만명 중 취업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 39만명 중에서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로 인하여 평상시 보다 8.1만명(평상시 보다 21% 감소)이 감소한 약 31만명 정도가 취업할 것으로 추정

[표 6] 2009년 대졸자 취업 전망

(단위: 천명, %)

	졸업자 대비 진로현황 비율 (3년치 평균)	2009년도 졸업자 진로 추정(A)	경제위기시 인력공급 추정(B)	증감 (C=B-A)	평시대비 증감율 (C/A)
진학자	7.2	40,172	57,192	17,020	0.4
취업자	69.4	386,265	305,156	-81,109	-21.0
무직자	20.4	113,526	139,337	25,811	22.7
기 타	1.0	5,624	14,966	9,342	166.1
미 상	2.0	10,824	39,760	28,936	267.3
졸업자 총계	100.0	556,411	556,411	-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II. 일자리 예산과 문제점

1. 예산 현황

- 2009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4조 5,489억원이며, 총 19개 부처·청이 「일자리 제공」(32만명)과 「인력양성」(430만명) 등 2개 유형의 사업을 통하여, 총 462만명을 지원할 예정임
 - 유형별로는 「일자리 제공」 예산이 총 예산의 59.9%인 2조 7,231억원, 「인력양성」 예산이 40.1%인 1조 8,258억원임
 - 「일자리 제공」은 임금이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지원사업이며, 「인력양성」은 취업기회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직업훈련 등임

[표 7] 2009년도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및 지원대상자 수 현황

(단위: 억원, 천명, %)

	예산 (비중)	지원대상자 수 (비중)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일자리	12,366 (27.2)	126 (2.7)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12,309 (27.1)	30 (0.6)
단기일자리	2,557 (5.6)	165 (3.6)
소 계	27,231 (59.9)	321 (6.9)
[인력양성]		
직업능력개발	16,087 (35.4)	4,259 (92.1)
미래산업 청년리더	1,155 (2.5)	13 (0.3)
글로벌 청년리더	873 (1.9)	15 (0.3)
여성다시일하기	143 (0.3)	15 (0.3)
소 계	18,258 (40.1)	4,302 (93.1)
합 계	45,489 (100.0)	4,622 (100.0)

주: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점검을 위한 일자리사업 분류기준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 「일자리 제공」 예산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1조 2,366억원(12.6만명),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1조 2,309억원(3만명), 단기일자리 2,557억원(16.5만명) 수준임
 - ‘사회서비스일자리’와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예산 비중은 「일자리 제공」 예산 (인력양성 제외) 대비 각각 45%씩 차지
 - 사회서비스일자리 지원사업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인력이 부족한 보육·의료·문화관광·환경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 「일자리 제공」 예산 중에서는 ‘단기 일자리’ 예산 비중이 가장 작아 9.4%에 불과
 - ‘단기 일자리’ 중에서는 노인일자리(1,166억원, 16만명)의 1인당 지원단가(월평균임금 20만원)가 낮아, 예산규모에 비해 지원대상자 수가 타 사업보다 많음
 - 「인력양성」 부문에서는 ‘직업능력 개발’ 위주로 사업 추진
 - ‘직업능력개발’ 예산은 「인력양성」 예산 대비 88.1%를 차지하며, 지원대상자 수도 「인력양성」 지원대상자 수 대비 99.0% 수준

- 전년대비 예산변동 양상을 보면, ‘글로벌 청년리더양성’ 예산(873억원)은 2008년 대비 94.4%, ‘미래산업 청년리더양성’ 예산(1,155억원)은 103.0% 증가한 반면, ‘사회서비스일자리’ 예산(1조 2,366억원)은 18.2% 증가에 그침
 - ‘글로벌 청년리더양성’ 중 해외취업연수(206억원, 노동부)와 KOICA 해외봉사 단과견(353억원, 외교통상부) 예산 증가율은 각각 85.6%와 59.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미래산업 청년리더양성’은 대부분의 세부사업이 2009년에 신규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103.0%)이 타 사업보다 높음
 - ‘사회서비스일자리’ 중 보건복지가족부의 돌봄서비스 예산은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돌봄서비스 중 노인돌보미(521억원)와 가사간병도우미(536억원) 예산은 전년대비 각각 21.1%와 10.1% 감액
 - 산림청의 산림서비스제공(593억원) 예산은 전년대비 1억원 증가에 그침
 - ‘단기 일자리’ 중 공공기관 청년인턴제(575억원)는 2009년 신규사업이며, 노인 일자리(1,166억원) 예산은 전년대비 21.5% 증가

- 노동부가 주로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 중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985억원)과 전직실업자 직업훈련(1,733억원) 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각각 104.4%와 36.9%인 반면, 취업 취약계층인 새터민 직업훈련 예산은 전년대비 26.5% 증가한 43억원에 불과

[표 8] 유형별 주요사업 예산 현황: 2008~2009년

(단위: 억원, 명)

사업유형/주요사업	부처명	2008		2009	
		예산	지원대상자 수	예산	지원대상자 수
[사회서비스]		10,458	110,178	12,366	125,950
아이돌보미	복지부	56	2,049	156	4,973
노인돌보미	"	660	10,679	521	8,332
산모신생아도우미	"	187	1,672	258	2,258
가사간병도우미	"	596	10,653	536	9,000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	750	12,500	1,124	17,995
예술강사 운영	문화부	290	2,725	368	4,100
산림서비스제공	산림청	592	4,915	593	5,590
숲가꾸기	산림청	2,478	14,531	3,132	207
[중소기업창업활성화]		-	-	12,309	29,445
창업활성화(융자)	중소기업청	-	-	10,000	4,790
창업기업투자보조금	"	-	-	600	4,320
장기실업자등 창업점포	노동부	150	370	140	405
[단기 일자리]		-	-	2,557	165,284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전부처	-	-	575	24,000
노인일자리	복지부	951	117,000	1,166	160,000
[직업능력개발]		-	-	16,087	4,258,606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노동부	482	20,400	985	44,241
새터민 직업훈련	"	34	1,100	43	1,084
전직실업자취업훈련	"	1,733	68,240	2,373	103,316
사업주능력개발지원	"	3,311	3,228,000	3,911	3,649,000
[글로벌 청년리더양성]		449	7,016	873	14,643
해외취업연수	노동부	111	4,300	206	3,682
전문대학생 해외인턴	교과부	30	470	51	800
KOICA 해외봉사단	외교부	221	650	353	1,000
[미래산업 청년리더양성]		569	3,920	1,155	13,416
바이오전문인력양성	교과부	-	-	140	730
공간정보산업인력양성	국토부	-	-	10	100
첨단우주항공산업인력	국토부	-	-	36	365
[여성다시일하기]		-	-	143	15,000
경력단절여성훈련	노동부	-	-	70	5,000

주: 2008년 예산 및 지원대상자 수 파악이 불가능한 일부 사업유형은 2009년 현황만 표시함.

자료: 각 부처.

□ 부처별·유형별로 일자리 지원사업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노동부(40.7%)의 경우 「일자리 제공」 보다는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위주로 사업 추진
 - 노동부 소관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대비 '직업능력개발' 예산 비중은 86.8%(1조 6,087억원)인 반면, 「일자리 제공」 예산 비중은 11.5%(2,129억원)에 불과
- 총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대비 「일자리 제공」 예산 비중이 가장 큰 부처는 중소기업청(44.2%)임
 - 중소기업청의 「일자리 제공」 예산 비중이 큰 이유는 창업활성화 융자(1조원)를 비롯하여, 창업기업 투자보조금지원(600억원) 등 대규모 재정사업이 2009년 신규로 추진 되기 때문임
- 「일자리 제공」 부문 중 ‘사회서비스일자리’ 예산 비중이 가장 큰 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산림청의 2개 부처임
 -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서비스일자리' 예산은 동 부처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대비 79.4% (4,882억원)를 차지하며, 세부사업으로는 아이돌보미(156억원), 산모신생아도우미(257억원), 노인돌보미(517억원), 아동청소년 발달지원(741억원) 등 돌봄서비스에 집중됨
 - 산림청 소관 일자리 지원사업은 숲가꾸기(3,132억원)와 산림서비스제공(593억원)으로, 2개 사업 모두 '사회서비스일자리'로 분류
- ‘단기 일자리’ 예산 대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단기 일자리’ 예산 비중은 46.0%로 가장 크게 나타남
 - '단기 일자리' 예산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비중이 큰 이유는, 동 부처가 단독으로 추진 하는 노인일자리(1,166억원, 16만명)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임
 - '단기 일자리' 중 2009년 신규사업인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는 전부처가 추진하며, 2009년 예산은 중앙정부 및 공기업·공공기관 575억원 이외에 지자체 446억원을 포함한 총 1,021억원이며, 지원대상자 수는 중앙정부 및 공기업·공공기관 24천명 이외에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7.5천명을 포함한 총 31.5천명에 달함

[표 9] 2009년도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및 지원대상자 수: 부처별·유형별

(단위: 억원, 천명)

	예 산	지원대상자 수
[노동부]	18,525	4,292
일자리 제공	2,129	103
- 사회서비스	1,902	16
-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140	86
- 단기일자리	87	1
인력양성	16,396	4,276
- 직업능력개발	16,087	4,259
- 글로벌 청년리더	206	7
- 여성다시일하기	103	10
[중소기업청]	12,039	29
일자리 제공(중소기업 창업활성화)	12,039	29
[보건복지가족부]	6,149	223
일자리 제공	6,082	220
- 사회서비스	4,882	60
-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30	-
- 단기일자리	1,181	160
인력양성	55	2
- 미래산업 청년리더	55	2
[산림청]	3,724	26
일자리 제공(사회서비스)	3,724	26
[환경부]	1,033	6
일자리 제공	935	5
- 사회서비스	217	1
-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100	-
- 단기일자리	618	4
인력양성	98	1
- 미래산업 청년리더	98	1
[기 타]¹⁾	4,022	46
일자리 제공	2,311	24
- 사회서비스	1,640	23
- 단기일자리	671	1
인력양성	1,711	23
- 미래산업 청년리더	1,002	10
- 글로벌 청년리더	667	7
- 여성다시일하기	40	5
합 계	45,489	4,622

주: 1)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문화재청, 농업진흥청, 여성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등 14개 부처·청임.

자료: 기획재정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이외에도, 잠재적 성장동력사업인 ‘녹색 뉴딜사업’도 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녹색 뉴딜사업’은 11개 부처·청이 총 36개 사업(9개 핵심사업 및 27개 연계사업)수행하며, 2009년에는 4조 3,626억원을 투입하여 9.3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 중임
 - 2009~2012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여 9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국무회의, 2009. 1. 6)
 - 핵심 9개 사업은 재정투입규모와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큰 사업으로서, 녹색교통망 확충(1조 8,349억원), 4대강 살리기(4,881억원),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3,209억원) 등으로 구성됨
 - 연계사업 27개 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5,137억원), 환승시설 구축(1,782억원), 재해예방·훼손산림 복원(786억원), 바이오매스 생산기지구축(546억원) 등임

[표 10] 2009~2012년간 녹색뉴딜사업 재정소요 및 일자리 창출효과(추정)

(단위: 억원, 만명)

	재정소요			일자리		
	2009	2010~2012	합 계	2009	2010~2012	합 계
[핵심사업](9개)	32,223	361,567	393,790	6.3	63.0	69.3
녹색교통망 확충	18,349	78,187	96,536	2.5	11.3	13.8
4대강 살리기	4,881	139,895	144,776	0.7	19.3	20.0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3,209	17,318	20,527	0.2	1.3	1.4
기 타	5,784	126,167	131,951	2.9	31.1	34.1
[연계사업](27개)	11,403	95,299	106,702	3.0	23.3	26.3
재해위험지구 정비	5,137	19,901	25,038	0.9	3.3	4.2
환승시설 구축	1,782	3,396	5,178	0.3	0.6	0.9
재해예방·훼손산림 복원	786	6,541	7,327	0.8	4.4	5.3
바이오매스 생산기지	546	2,262	2,808	0.1	0.4	0.5
기 타	3,152	63,199	66,351	0.9	14.6	15.4
합 계	43,626	456,866	500,492	9.3	86.3	95.6

주: 재정소요는 국고와 지자체·민간 부담분을 합한 금액임.

자료: 국무회의 보고자료(11개 부처·청 합동),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 추진방안, 2009. 1. 6.

- 우리나라의 ‘녹색 뉴딜사업’과 마찬가지로, 최근 세계 각국은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성 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녹색 일자리)을 모색하고 있음⁸⁾
 - 미국은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2009~2018년간 총 1,500억 달러를 투입하여,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 정책 추진 발표
 - 영국은 2008~2020년간 대체에너지 산업과 관련하여 총 100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1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목표
 - 프랑스는 친환경산업에 2007~2020년간 총 4,000억 유로를 투자하여, 50만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

2. 문제점

가.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자원배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 미흡

- 당면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예산 확대 미흡
 -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 예산은 큰 폭으로 확대된 반면, 대규모 실업방지에 주안점을 두는 사회서비스일자리 및 단기일자리 등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사업의 예산 확대는 미미함
 - 인력양성을 위한 「글로벌 청년리더양성», 「미래산업 청년리더양성」 사업 예산의 2008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94%와 103%에 달하는 반면, 단기 일자리 효과가 큰 「사회서비스일자리」와 「노인일자리」의 예산 증가율은 각각 18%와 22%에 불과
- 취업 취약계층의 주요 일자리인 돌봄서비스 등의 과소한 예산규모
 - 중·장년층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산모신생아 돌보미, 가사간병 도우미 등 돌봄 서비스 사업 예산은 200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대비 6.1%인 2,780억원, 총 지원대상자 수 대비 0.1%인 약 4.5만명에 불과

8) 도건우 외 2인, 「녹색뉴딜사업의 재조명」,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691호, 2009. 2. 11.

- 돌봄서비스 중 노인돌보미(521억원)와 가사간병도우미(536억원) 예산은 전년대비 각각 21.1%와 10.1% 감액
- 일자리 자격요건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한정하는 산림청 소관 사회서비스 일자리지원사업의 예산 부족 우려
 - 신청자 수 증가와 사업수행 인력 부족으로 「숲가꾸기」(3,132억원, 21만명)와 「산림서비스 제공」(593억원, 5,590명)의 경우 인력충원 필요
 - 산림청의 산림서비스 제공(593억원) 예산은 전년대비 1억원 증가에 그침
-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예산의 우선적인 배분 미흡
 - 최근의 실업문제는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국민일반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반적인 일자리 제공 예산의 확대 필요성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고용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취업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는 배려는 필요할 것임
 - 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사업의 경우, 숲가꾸기(3,132억원), 가사간병도우미(536억원) 등 취업 자격요건을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은 전체 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사업 예산 대비 34.4%인 4,260억원 규모임
 - 반면, 취업 자격제한 없이 국민일반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은 전체 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사업 예산의 65.6%인 8,106억원 규모

나. '일자리 나누기' 실천노력 확산을 위한 사업비 부족 우려

- 임금삭감이나 근로시간 단축, 직무분할 등을 통한 노사의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충분한 예산확보와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미흡
 - 일자리 나누기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583억원),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35억원), 교대제전환지원금(61억원) 등 3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679억원에 불과

-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예산이 전년대비 67.8% 증가하였으나 최근 신청건수 급증을 감당할 만큼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며, 지원요건 완화와 지원수준의 상향 조정 등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을 보다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미흡⁹⁾
- 근로시간 단축과 교대제 전환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및 교대제 전환지원금 예산은 전년대비 각각 65.4%와 55.2% 감액됨

다. 취약계층 대상 인력양성 예산 및 사업연계 부족

-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 증가에 대비하여 인적자본의 상실 방지와 신속한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사업 예산 부족 우려
 - 노동부 소관의 「실업자 등 직업훈련」(985억원, 4.4만명)과 「전직실업자 직업훈련」(2,373억원, 10.3만명) 예산규모는 최근 실업자 급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2009. 1월 실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7.3만명 증가하였고, 취약계층 취업자 수는 임시 근로자 13.4만명, 일용근로자 13.3만명, 자영업자 11.2만명 각각 감소
- 취업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사업은 별도의 생계유지비가 지원되지 않아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성과 미흡
 - 새터민, 자활대상자 등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사업의 경우, 훈련기간 동안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중도탈락율이 타 훈련사업보다 높음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기간 중 생계유지 지원사업은 부재
 - 훈련기간 중 생계유지 지원사업은 노동부의 「신규실업자등 훈련생계비 대부」(2009년 신규사업, 240억원)가 있으나, 지원대상(신규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등)에서 새터민과 자활대상자 제외

9) 인력재배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보면, 업종전환 후 60% 이상의 근로자를 재배치할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요건이 엄격하고, 지원수준도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의 2/3(대기업 1/2) 수준임.

- 2009년도 예산 중 새터민과 자활대상자의 훈련기간 중 생계관련 비용 보조는 교통비·식비 월 11~14만원, 훈련수당 월 10~45만원 수준으로, 4~6개월의 훈련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 새터민 직업훈련의 2008년 중도탈락비율은 17.5%로, 실업자 직업훈련 11.5%보다 높게 나타남

라. 일자리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 미흡

- 총 19개 부처·청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지휘탑(control tower) 부재로 인하여, 사업의 탄력적 운용이 미흡하고 유사중복 추진 등의 문제 발생
 - 일자리 지원은 부처간 개별 사업의 발굴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을 종합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지휘탑이 사실상 부재
 - 신규사업의 발굴, 기존사업의 예산배분 조정, 사업의 퇴출 등이 노동시장 여건과 수요에 맞게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정되지 못하여 사업의 탄력적 운용 미흡
 - 사업 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정 노력이 부족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특정 지원대상자가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 발생¹⁰⁾
- 정책추진 방향과 자원배분이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일자리 창출효과 반감 우려
 - 환경정책 중 폐기물 관련 사업의 경우, 폐기물의 매립·소각에서 자원화·에너지화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매립·소각을 위한 환경부의 예산은 자원화·에너지화 관련 사업 예산보다 규모가 큼
 - 매립·소각 관련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1,140억원), 자원화·에너지화 관련 사업은 폐기물에너지화대책(421억원)과 폐기물에너지화사업¹¹⁾(17억원) 등이 있음

10)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129억원)와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 후 학교」(8억원)의 2개 사업이 교육과정 및 서비스대상이 중복되는 사례를 지적할 수 있음.

11) 온실가스 전문가양성, 폐기물 전문가양성 등을 위해 추진되는 환경부 소관 「미래산업 청년리더양성 사업」(98억원) 중 일부 사업임.

- 폐기물에너지화사업과 환경정책 추진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투자는 인력 대체효과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우려 있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일자리 제공 효과가 큰 노인일자리(1,166억원, 16만명)의 경우, 실질적인 소득창출효과가 큰 민간분야 일자리 비중은 적음

- 총 지원대상자 수 16만명 중, 공공분야 일자리 지원대상자 수는 13.8만명(86.3%), 민간분야는 2.2만명(13.7%)임

- 공공분야 일자리는 일회성 일자리로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인들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초의 목표와 배치될 수 있음

마. 지자체 가용재원의 확보 미흡

□ 일자리 사업 추진에 있어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에서는 가용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추진 미흡

- 재정자주도 등 지자체 재정여건을 반영한 국고보조율 차등보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빈곤층이 밀집해 있음에도 재정력이 취약한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인한 문제 발생¹²⁾

-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서비스일자리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는 일정 비율을 지자체가 매칭펀드로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재정력이 취약한 일부 지자체는 매칭자원 부족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함
-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지자체 복지사업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 있음

12) 대전광역시 유성구·동구 등에 대한 사례(노컷뉴스(CBS 대전) 인터넷 기사, 2009. 1. 29).

III. 일자리 관련 법률안 현황

1. 총괄

-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위기에 직면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정부가 제출을 준비 중인 제·개정 법률안 가운데 일자리와 관련된 사례 20개를 검토함¹³⁾
 -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정부가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제·개정 법률안 중, 일자리와 관련된 대표적 법률안 사례를 파악하고, 이들 법률안이 구체적으로 일자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가를 유형화하여 검토함

[표 11] 일자리 지원의 유형별 제·개정 법률안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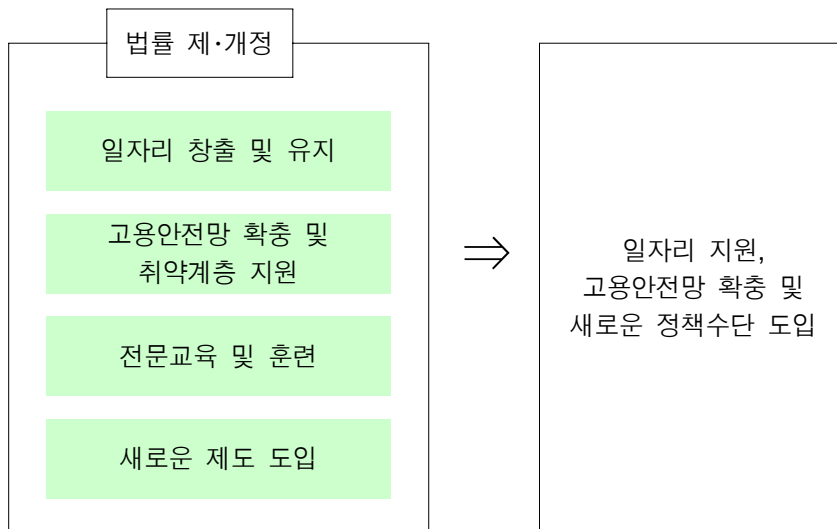
유형	관련 법률안
일자리 창출 및 유지(1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취업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교육 및 훈련 제공(2)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자리 관련 새로운 제도 도입(2)	「일자리평가법안」,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주: 관련 사례 수와 법률안 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부 법률안이 유형분류에서 중복 포함되기 때문임.

13) 2009. 2. 13일 기준임.

- 일자리 관련 법률안의 제·개정이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고용안전망 확충 및 취약 계층지원, 취업지원을 위한 전문교육 및 훈련제공, 일자리 관련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일자리 및 고용안전망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됨¹⁴⁾
 -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보육교사, 성교육교사, 수화방송인과 같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나 고용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정책의 기본 틀을 이루는 고용안전망 확대, 취약계층 지원, 전문교육이나 훈련지원 등의 확대·강화에 기여
 -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일자리/고용 영향평가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발굴·제시함으로써, 일자리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 제시

[그림 4] 일자리 부문 입법과제와 기대되는 효과



14)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이나 조항의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제·개정 법률안을 취합·유형화함으로써, 개별 법률안이 갖는 고유의 입법취지를 심도 있게 반영하지 못한 점, 시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일자리 관련 모든 제·개정 법률안을 포함하지 못한 것, 각각의 법률안 제·개정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공통화·유형화함으로써 법률안 고유의 파급효과 등은 포함하지 못한 점, 그리고 법률 제·개정에 따른 재정소요를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은 분석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

- 국가적 현안인 일자리문제를 위한 경기부양책이나 재정을 통한 일자리사업 추진 등의 정책수단 이외에도, 관련 법률 제·개정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단기일자리 제공과 고용안전망 확충 등 시급한 대책 뿐 아니라, 제도개선 등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 대책의 일환으로 입법지원의 필요성을 시사

2. 법률안 분석

가. 일자리 창출 및 유지

- 가정보육교사 제도 도입,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청년 고용촉진, 고용장려세 신설 등의 법률안은 직접적으로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지원을 통한 일자리의 확대효과를 도모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전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조건 완화,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은 고용 유지와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함

1) 일자리 창출

- 가정보육교사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전문보육교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아동을 대상으로 1:1로 보육하는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도입
 - 보육교사 자격증 보유자의 고용증진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의도하고 있음
 - 가정보육을 사회복지서비스로서 보육의 범주에 포함하고, 가정보육교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보조 대상에 포함

[사례 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의 범주에 가정보육을 포함
 - 용어의 정의에 가정보육 및 가정보육교사 조항을 신설
 - 비용의 보조대상에 가정보육교사를 포함
 - 가정보육교사의 근무경력을 인정
-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 2009. 2. 13)

□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제공

-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
-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의원안과 정부안이 각각 제출됨
 - 의원발의 법률안은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교육훈련 강화, 사회적기업의 날 지정,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정부제출 법률안은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지정, 사회적기업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사례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노동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 전문인력 육성과 근로자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실시
 - 사회적기업 지원 재원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 사회적기업 기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조세감면 근거 마련
- (진영 의원 대표발의 - 2009. 10. 6)

-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지정: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분야 전문가의 자문 및 자문에 따른 비용 지원
 - 사회적기업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협력 지원
- (정부 제출 - 2008. 11. 12)

□ 청년실업해소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고, 공공기관 등의 청년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 대부분 청년실업해소 계획 수립의 주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청년 미취업자 채용을 위해 노력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기관정원의 일정부분 이상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외에도 일부 법률안에서는 '청년실업해소대책위원회' 또는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의 신설, 청년채용실적의 경영실적 평가 반영 등을 내용으로 하여 청년실업해소 효과를 의도함

[사례 3]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공동사업개발 신설 ·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계획수립의 주체를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협조의무 부과대상을 정부투자기관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노력 (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 2008. 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에 청년실업해소대책위원회를 둠 · 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채용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실적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던 것을 채용하도록 의무화 함 (최철국 의원 대표발의 - 2008.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 차원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관계 기관·지역 및 사업 간의 업무조정과 평가를 하기 위하여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 취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지방 공기업을 대상기관에 포함함 (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 2008. 1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실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각 공공기관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 (홍희덕 의원 대표발의 - 2009. 1. 7)

□ 성교육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학생의 올바른 성관념 확보와 성교육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제출됨
- 성교육전문인력 배치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동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성교육전문인력을 양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각 1명씩의 성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학교의 장이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학급별로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함

[사례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의무를 부여
-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각 1명씩의 성교육 전문인력을 배치
- 학교의 장이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학급별로 매년 4시간 이상 실시
(전여욱 의원 대표발의 - 2008. 11. 6)

□ 수화통역인 양성

- 방송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공 시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화,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하는 내용임
- 수화통역인 등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보도·선거 방송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사례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화면 및 메뉴의 구성에 있어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 노력의무 부여 · 보도·선거 방송 등에 관한 인터넷멀티미디어 콘텐츠 제공 시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의무화 ·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 (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 2008. 7. 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방송·선거방송·재난방송 프로그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강행규정화 ·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 (정해걸 의원 대표발의 - 2008. 8. 6)

□ 조세 감면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자장려세 및 고용장려세, 근로장려세를 신설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통한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안도 제출되어 있음

[사례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연구인력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투자장려세 도입 · 각 업종별로 표준인력 이상 많이 고용한 업종에 대하여 초과인건비의 일부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고용장려세 도입 · 근로소득장려세제를 확대하여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와 농업소득자도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강운태 의원 대표발의 - 2008. 11.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게도 적용하여 고용창출 (백성운 의원 대표발의 - 2008. 9.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까지인 지방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을 2012년까지로 연장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 2008. 9. 8)

2) 일자리 유지

□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전환

- 휴업 및 직업훈련 이외에 근로시간 단축과 교대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를 나누어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의 고용을 유지하고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하며, 이를 위한 재원으로 카지노, 복권 등 사행산업의 수익금 일부를 한시적으로 사용함
 - 고용유지 방안으로 휴업, 직업훈련 외에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전환을 추가하여 이를 실시할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고, 신규고용 창출에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사례 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유지의 방안으로 휴업, 직업훈련 외에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전환을 추가하고, 이를 실시할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
- 신규고용 창출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전환에 노사가 합의할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
-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에 사행산업의 수익금을 추가
- 사행산업 수익금의 고용보험기금에의 출연은 고용안정 사업에 3년간 한시적 적용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 2009. 2. 4)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조건 완화

- 정부는 근로자 개별 동의에 의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에 있음
 - 개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동의에 의한 경우에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임

[사례 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 완화 - 개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동의에 의한 경우에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
-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서 및 정년연장계획서 제출을 고령자 고용현황 조사로 일원화 (정부 제출 예정)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기간제 및 단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근로자 및 통상근로자로 전환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사례 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 고용안정 촉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2008. 12. 1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경우 및 단시간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2009. 1. 2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2009. 1. 23)
·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고용의제 · 사용사업주가 불법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즉시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파견근로자 외에 노동조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까지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차별시정 신청권자의 범위 확대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2008. 11. 11)

-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하는 측면과 고용안정을 촉진하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고용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08. 11. 11)의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기간초과 사용 시의 고용의제, 불법사용시의 직접 고용, 차별시정신청권자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함

나. 고용안전망 및 취약계층 지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범위 확대, 구직급여 등 지급요건 완화, 최저임금제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위한 법률안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축소함으로써 고용불안 해소효과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령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기회 제공을 위하여 제출된 법률안은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를 가져오므로써, 취업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1) 고용안전망

-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
 - 군인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임
 - 고용보험의 임의가입 범위를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효과 도모
 - 군인연금 미대상자인 군인(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근무하는 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실직 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현재 허용되지 않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가입을 가능하게 하여 자영업자만의 실업급여 계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을 영세 자영업자로 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사례 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에 기가입된 임금근로자와는 다른 별도의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정을 신설하여 운영
 -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로 충당
- 영세 자영업자로 적용대상을 한정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전부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로 한정
(정부 제출 예정)
- 군인의 경우에도 군인연금 미대상자인 군인(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근무하는 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심대평 의원 대표발의 - 2008. 11. 21)

□ 구직급여 등 지급요건 완화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의 수급 일수를 연장하며,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를 늘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경기침체에 따라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구직급여가 실질적으로 생계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직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례 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에서 120일 이상으로 완화
-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최저기초일액으로 함
- 개별연장급여의 수급 일수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
- 특별연장급여의 수급 일수를 60일에 90일로 연장
- 이직한 피보험자가 6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최장 360일까지 연장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2009. 1. 23)

□ 최저임금제 적용범위 확대

- 가사사용인 및 수습근로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제 결정 시 물가인상률 등을 추가하는 내용임
-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국가 시행제도 내로 편입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물가인상률을 추가하여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수습근로자,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정신·신체 장애 근로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사례 1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예외 규정을 삭제함
-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물가인상률을 추가하고 최소한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이상이 되도록 함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나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
- 정신 또는 신체장애 노동자, 수습노동자, 양성훈련을 받고 있는 노동자, 그 밖에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홍희덕 의원 대표발의 - 2008. 12. 3)

2) 취업 취약계층 지원

□ 장애인의 취업기회 제공

- 장애인의 취업고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무고용률을 확대하는 내용임
-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용률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사례 1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 중증장애인 위주로 의무고용제 개편: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2배수의 일반 장애인 고용의제 ·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기준 개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 장려금의 지급단가와 지급기간을 고용기간, 장애정도 및 장애인의 성(性)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정부 제출 - 2008. 1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근로자 총수의 3% 이상 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일정비율을 고용하도록 조정하고, 장애인 인구 변동의 추이를 반영하여 의무고용 비율을 신축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을 보장·촉진 (박은수 의원 대표발의 - 2008. 9.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 · 근로지원인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은 100분의 6, 민간기업은 100분의 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무고용률은 3년마다 정하도록 함 (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 2008. 12. 11)

□ 고령자 취업 확대 도모

- 고령자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으나, 고령자들의 취업기회가 넓게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고령자고용정보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임
- 고령자의 취업기회 제공을 통해 고령자의 취업을 확대하려는 입법취지를 가짐
 - 고령자고용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고령자고용정보센터의 업무에 고령자 취업의 다양화를 위한 방안 등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사례 1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고령자고용정보센터의 업무에 고령자 취업형태의 다양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추가함으로써 고령자들이 다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이성현 의원 대표발의 - 2008. 8. 7)

□ 저소득층 취업기회 제공

-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취업성공수당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소득층 취업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임
- 취업취약계층으로 파악되는 저소득층의 취업률 제고와 취업기회의 확대 효과를 목적으로 함

[사례 15] 「저소득층 취업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저소득층에 대하여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 증진 → 집중 취업알선)
- 프로그램 참여자로서 ‘취업’한 경우 일정수준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등 (정부 제출 예정)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 경력단절여성과 관련된 구인·구직 정보 수집 및 특성별 인재은행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함
- 출산·육아 부담 등을 이유로 생기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의 경력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경력단절여성 등과 관련된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하여 사업주 및 관련단체에 제공하고, 상담이나 자문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며, 인재은행을 통한 정보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사례 16]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여성 등과 관련된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하여 사업주 및 관련단체에 제공
- 경력단절여성 등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상담·자문 등 필요한 지원 실시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
-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인재추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보를 기업체·연구기관 등에 연계할 수 있도록 인재은행을 지정·운영 (정부 제출 - 2008. 10. 23)

다. 전문교육 및 훈련

- 지능형로봇 기술과 관련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여 과학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학·관 협력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법률안은 전문교육과 훈련 실시를 통하여 인적자원 개발 효과를 유발하고자 함

1) 청년글로벌인재양성

-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학·관 협력 강화와 글로벌 인재양성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청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의도하고 있음
 -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각 주체의 책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취업애로 청년에 대한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하여 청년층에 해외 직장체험 및 해외 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사례 17]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제명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변경
-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각 주체의 책무 및 협력체계 구축
 - 기업, 학교 및 정부 등 청년고용과 관련된 각 주체 간의 협력 실시
 - 학교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청년고용 관련 각 주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
- 취업애로 청년에 대한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
-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 직장체험 및 해외 봉사활동 등의 기회 제공
(정부 제출 - 2008. 10. 23)

2) 지능형로봇 기술교육

- 로봇 기술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술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로봇 기술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려는 내용임
- 과학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인적자원개발(HRD)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과학영재에게 지능형 로봇 기술에 대한 특성화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청소년에 대한 지능형 로봇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사례 1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영재에게 지능형 로봇 기술에 대한 특성화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청소년에 대한 지능형 로봇 기술 교육사업을 실시
(구본철 의원 대표 발의 - 2008. 9. 23)

라. 일자리 관련 새로운 제도 도입

- 「일자리영향평가법안」은 고용 관련 법률안 제·개정시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일자리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일자리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제 도입을 포함하고 있어, 일자리 관련 새로운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1) 일자리 영향평가제도 도입

- 고용과 관련 있는 법률안의 제·개정 시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일자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임

- 고용창출과 일자리 감소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입법취지를 가짐
 - 일자리영향평가서는 해당 입법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될 일자리의 증가 및 감소 수, 해당 입법이 고용시장 및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고용조건 및 채용요건에 미치는 영향, 기업·근로자·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 분석 등의 사항을 포함

[사례 19] 「일자리영향평가법안」

- 일자리영향평가 실시 시 노동시장 전체의 일자리 증가나 감소의 고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고려, 입법에 따른 고용 및 경영여건 변화의 고려 등을 기본원칙으로 함
-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고용관련 법률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일자리영향평가에 관한 보고서 첨부
-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 시 일자리영향평가위원회에 심의 신청
- 정부의 일자리영향평가서를 분석하고 해당 법률안에 대해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일자리영향평가위원회를 둠 (임두성 의원 대표발의 - 2008. 10. 28)

2) 고용 영향평가제도 도입

- 시·도에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일자리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해당 정책이 원래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정책에 대한 분석·평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사례 20]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실업급여 수급자 등의 자발적 구직노력 책무 신설
-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명확화 및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의 근거 신설
- 고용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고용정책심의회로 통합
- 민간부문에 의한 고용서비스 활성화
-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분석·평가
- 고용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정부 제출 - 2008. 11. 28)

IV. 해외 정책동향과 시사점

1. 총괄

- OECD 지역의 실업률은 2008년 12월 현재 6.8%로 전년보다 1.1%p 상승하였고, 미국, 일본, 영국의 실업률은 전년 대비 1.0~2.6%p 증가하였음¹⁵⁾
 - 미국: 실업률은 2009년 1월 현재 7.6%로, 전년동기 보다 2.6%p 상승
 - 일본: 실업률은 2008년 12월 현재 4.5%로, 전년동기 보다 1.3%p 상승
 - 영국: 실업률은 2008년 10월 현재 6.1%로, 전년동기 보다 1.0%p 상승

- 미국의 일자리 정책은 노후된 도로·학교 등 사회간접자본 개보수 투자, 취약계층에 대한 일시적 재정지원,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주요 정책수단임
 - 노후된 도로·학교 등 사회간접자본 개보수 투자는 경기후퇴로 심하게 타격을 받은 건설업을 부양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다수의 단기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계획된 것임
 - 경기침체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푸드스탬프 제공 증가, 실업보험 확대를 포함한 일시적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함
 -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은 경기침체에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주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공공부문 일자리를 유지하고, 의료·교육 등에 대한 지출삭감을 방지하고, 주정부의 경기침체에 대응한 정책수립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일본의 일자리 정책은 경기부양책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주요 정책수단임
 - 일본 정부는 1990년대에 이루어진 지방 SOC 확충에 대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최근에는 수발, 의료, 고령자에 대한 보살핌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고용대책 마련

15) OECD News Release, *OECD unemployment rate rises to 6.8% in December 2008*. 2009. 2. 9.

- 일본의 고용대책이 가지는 특징은 지자체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으며, 최근에는 지자체를 위하여 「긴급고용대책 참고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였음
 - 「고용대책 사업례」는 수발·육아·의료, 농림수산업, 환경·저탄소 등 10개 분야로 구분하고, 고용대책사업이 신규고용으로 이어지는 약 200개의 사례를 제시함
- 영국의 일자리정책은 경기부양책과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디지털 산업에서 고용창출을 중시하고 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 기업들이 연계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
 - 학교와 병원의 보수, 새로운 철도망 건설 등 공공사업에 투자하는데, 특히 경기 후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건설업체를 지원하고자 학교 보수사업을 시행하여 30,000명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함
 - 초고속 광대역망(high-speed broadband)에 투자하여 디지털산업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도로, 교량, 철도와 같은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보다 중시함
 - 공공부문과 민간 기업들을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실업자들의 조기취업과 교육훈련 제공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함
 - 영국에서는 국영우체국인 로얄 메일과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테스코 등 대기업들이 제휴하여, 실업자 조기취업과 교육훈련 제공 등을 위한 공동 노력 합의
- 주요 선진국들의 일자리 정책에서 얻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선진국들의 사회·경제 환경에 따라 일자리 정책의 중점도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환경에 맞는 일자리 정책의 목표를 정립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재정사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은 도로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 과학기술 지원, 의료, 교육에 중점을 두고, 영국의 경우 디지털 산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중점 전략으로 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장기불황 시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도로, 공항 등에 투자한 결과, 경기부양효과는 저조하고 국가채무만 확대된 것으로 지적되어,¹⁶⁾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돌봄서비스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

16)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녹색뉴딜사업의 재조명」, 2009. 2. 11. 차학봉, 「일본에서 배우는 고령화 시대의 국토」, 2006 참조.

- 중앙정부 주도에 의한 일자리 정책보다는 지역 상황에 맞는 성장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미국은 주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공공부문 일자리를 유지하고, 의료·교육 등에 대한 지출삭감을 방지하며, 주정부의 경기침체에 대응한 정책수립의 탄력성을 보장하고자 함
 - 일본은 지자체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고용사례를 발표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개별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참여하도록 함
-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사례와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기업들이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실업자들의 조기취업과 교육훈련 제공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확보하는 법·제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 일본은 극심한 경기침체가 재도래하면서 급증하는 비정규직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비정규직 양산이 향후 사회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함¹⁷⁾
 - 일본의 비정규직 비율은 1990년 19.2%로 20%에도 미치지 않았으나, 1991년 버블경기가 붕괴된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30.2%, 최근 통계인 2008년 7~9월에는 34.5%까지 증가하였음
 -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영향으로, 2008년 말 파견근로자의 해고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음
 - 위와 같은 파견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 일본정부가 확정된 「파견법」 개정안에서 비정규직 고용 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음

17)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7권 1호)」, 2009 참조.

[표 12] 주요 선진국의 최근 경제상황과 고용대책

국가	주요 정책 동향	경제상황
미국	<p>[경기부양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효율화, 과학기술 지원, 의료, 교육, 사회간접자본 <p>[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급여 기간 및 급여액 확대 - 건강보험 비가입자인 실업자에 대해 의료급여(Medicaid) 지원 - 실업자의 건강보험 가입기간 연장 시 건강보험료 지원 <p>[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부 의료급여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율 확대 - 주정부의 교육재정 지원 - 실업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주정부에 대한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경제성장률 -1.6% 전망 - 실업률 7.6%(2009. 1월 기준)로 전년 동기간 대비 2.6%p 상승 - 2008년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대비 0.1% 상승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부양책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주요 정책수단 - 1990년대 지방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수발, 의료, 고령자에 대한 보살핌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고용대책 마련: 신규고용으로 이어지는 약 200개의 사례를 지자체에 제시 - 고용유연성 증대로 경기침체 시 파견근로자 대량 실직을 초래해 제도개선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경제성장률 -2.6% 전망 - 실업률 4.5%(2008. 12월 기준)로 전년 동기간 대비 1.3%p 상승 - 2008년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대비 0.4% 상승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부양책과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디지털산업에서의 고용창출 중시 - 실업자의 직업재활 교육 강화 - 공공과 민간 기업들이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유도 - 경기침체로 근로자의 필요에 맞춘 유연근로제 확대에 대한 논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경제성장률 -2.8% 전망 - 실업률 6.1%(2008. 12월 기준)로 전년 동기간 대비 1.0%p 상승 - 2008년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대비 3.1% 상승

2. 해외 정책동향

가. 미국

- 미국 경제는 올해 -1.6%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2009년 1월 실업률이 7.6%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2.6%p 상승해서 일자리 창출이 오바마 정부의 최대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미국 경기회복안을 담고 있는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최종안이 2009. 2. 13일 상·하원을 통과하였음
 - 동 경기회복안은 2년 동안 7,872억달러의 재정이 소요되며, 정부지출 3,085억 달러(39.2%), 조세감면 2,883억달러(36.6%), 취약계층지원 1,904억달러(24.2%)로 구성됨
 - 오바마 정부는 동 경기회복안이 3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미국의 경기회복안은 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구직난 해소와 장기적인 생산성 투자를 통한 경제적 번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 회복안을 통해 본 미국의 고용대책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음
 - 미국의 고용대책은 경기부양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실업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그 외 조세감면을 통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로 요약될 수 있음
- 경기부양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인 일자리뿐 아니라,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고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 전통적인 건설분야 사회간접자본 투자(도로·교량 재건 등)에 더하여, 교육, 의료, 에너지 및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 강화에 역점을 둠

[표 13] 2009년 경제위기에 대응한 미국의 고용대책

분 야	내 용
[경기부양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재생에너지 시스템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 등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노후화된 도로 및 교량 재건, 공공건물 현대화, 공공인프라의 에너지 절감개선 투자 지원, 수자원보호, 홍수방지 및 환경복원 지원 등
의료	의료기록 전산화를 통한 병원 현대화 등
교육	학교의 노후건물 개보수 및 교실 내 컴퓨터 설치
과학기술	초고속 인터넷 확산
[실업자 지원]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	- 직업훈련 지원 - 주 정부의 고용서비스 기관 지원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실업보험 확대] - 실업급여 기간 확대: 최대 33주 - 실업급여액 증액: 주급여 25달러 증액(현재 주급여 300달러)
	[의료지원 확대] - 건강보험 비가입자인 실업자에 대해 의료급여(medicaid) 지원 - 실업자의 건강보험 가입기간 연장 시(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COBRA) 건강보험료 지원: 12개월, 보험료의 65%
[주정부 지원]	
주정부 지원	주정부 의료급여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율 확대(한시적): 보조율을 4.9%p 확대, 실업률이 1.5%p 이상 증가하는 주 정부에 대해서는 실업률에 비례하여 보조율 증가
	저임금/파트타임/실업자에 대한 실업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주정부 지원
	주정부의 교육재정 지원
[세금감면]	
세금감면	법인세, 소득세

주: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을 중심으로 설명함.

자료: 1)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ost Estimate-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2009. 1.

2) Romer, C., & Bernstein, J, *The Job Impact of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 2009. 1.

- SOC 투자는 신규 건설보다는 노후화된 도로 및 교량 재건, 공공인프라의 에너지 절감 개선투자 지원, 수자원 보호, 홍수방지 및 환경복원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실업자에 대한 실업보험 및 의료지원 확대 등 경제 위기에 가장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 실업급여 수혜 기간을 추가로 최대 33주 확대하고, 현재 주급여 300달러인 실업급여를 추가로 25달러 증액할 계획임
 - 실업급여 수혜 기간은 20주로 확대하되, 심각한 실업상태(high unemployment)¹⁸⁾일 경우 추가로 13주를 확대함
 - 실업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비가입자인 실업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Medicaid)를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였으나 실업자가 된 경우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COBRA)」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때 정부가 12개월 치 건강보험료의 65%를 지원할 계획
-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은 경기침체에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주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공공부문 일자리를 유지하고 주정부의 경기침체에 대응한 정책수립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주정부에 대한 지원은 의료급여, 교육재정 등 의무지출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주정부 의료급여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율을 2009~2010년 간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연방정부 보조율을 4.9%p 확대하되, 실업률이 1.5%p 이상 증가하는 주정부에 대해서는 실업률에 비례하여 보조율 증가¹⁹⁾
 - 건강보험 비가입자인 실업자에 대해서 의료급여(Medicaid)를 지원할 경우 100% 연방정부가 부담
 - 저임금/파트타임/실업자에 대한 실업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주정부 지원
 - 주정부의 교육재정 지원

18) 전체 실업률이 6% 이상이거나 실업보험 가입자의 실업률이 4% 이상인 상태로 정의하고 있음.

19) 현행 의료급여에 대한 정부 부담률은 평균적으로 연방정부 57%, 주정부 43%임.

-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은 경기침체에 따라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주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감축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캘리포니아주는 22,000명의 기간제 주 직원을 해고하고 20만명의 주 공무원 임금을 연방정부가 제시한 하한선인 시간당 6.55달러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뉴욕주는 재정 절감을 위해 신규 고용을 중지하였음

나. 일본

- 일본 경제는 올해 -2.6%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2008년 12월 실업률이 4.5%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1.3%p 상승해서 일자리 창출이 경기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음
- 일본은 2008년 12월, 3개의 대책으로 구성된 경기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총액 75조엔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임
 - 경기대책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종합대책」, 「생활대책」,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의 3개 대책으로 구성됨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종합대책」은 2008년도 10월 16일에 편성된 2008년도 제1차 추경예산 사업으로 추진 중임
 - 「생활대책」은 2009년 1월 27일에 통과된 2008년도 제2차 추경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대책임
 -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은 2009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대책임
 - 2008년도 제1차 추경예산 11.5조엔, 2008년도 제2차 추경예산 27조엔, 그리고 2009년도 예산안 37조엔 등, 총 75조엔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임
- 경기대책 중 고용대책을 살펴보면, 「고용유지대책」, 「재취업지원대책」, 「취업내정(內定)최소 방지대책」, 「고용보험료 인하」, 「고용보험 대상 확대」의 5개 대책으로 구성됨

- 「고용유지대책」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명당 100만 엔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임
 - 「재취업지원대책」은 4,000억엔의 고용창출기금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직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긴급고용창출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고용특별교부금」을 신설할 계획임
 - 「취업내정(內定)취소 방지대책」은 입사가 취소된 취업내정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명당 100만엔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임
 - 「고용보험료 인하」는 2009년에만 고용보험료를 0.4% 인하하고, 「고용보험 대상 확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자격요건도 완화할 계획임
 - 고용대책을 위해 2008년도 제2차 추경예산과 2009년도 예산안에서 1조 3,403억 엔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고용보험료 인하」에 편성된 예산이 6,400억엔으로 가장 많고, 「재취업지원대책」에 편성된 예산은 4,800억엔으로 두 번째로 많음
- 일본의 고용대책이 가지는 특징은 지자체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있으며, 최근에는 지자체를 위하여 긴급고용대책의 참고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였음
- 일본은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고용·경제대책본부」를 2008년 12월 24일 내각부에 설치하였고, 「긴급고용·경제대책본부」 회의를 2009년 2월 6일 개최하여 지자체를 위한 긴급고용대책의 참고사례를 마련하였음
 - 고용대책사업례는 돌봄서비스(수발)·육아·의료, 농림수산업, 환경·저탄소 등 10개 분야로 구분하고, 고용대책사업이 신규고용으로 이어지는 약 200개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 고용대책사업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례를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고용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고용형태가 임시직에 머물러 정규직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10개 분야별 주요 고용대책사업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14] 일본의 고용대책 사례: 주요사업 및 일자리 종류

분야	사업명	관련 부처	사업내용	기대효과
수발·육아·의료	Flexible 지원센터	내각부, 후생노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수요에 맞게 수발,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로, 실직자들을 고용하여 수발 및 육아 연수를 실시 - 사업주체는 지자체이며, 사회복지법인, 민간기업 등에 사업을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발, 육아 등 탄력적인 서비스 제공 - 실직자들에게 수발 및 육아서비스 훈련의 장소로 활용
	고령자종합 지원콜센터	총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를 위한 콜센터를 정비하여 고령자의 일상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독거노인 등의 일상생활 편의성 향상
	<p>일자리 사례: Flexible 지원센터, 보육소 고용촉진사업, 지역의 다양한 육아지원촉진사업, 장애인 지역취로촉진사업, 의사사무작업 보조자 설치지원사업, 병원내 아동보육운영사업, 병원안내업무 등 의료서비스 및 환자서비스향상사업, 왕진 및 방문간호사 이송서비스사업, 특정건강진료 및 특정보건지도 실시을 향상사업, IC태그 활용 아동 안전활동, IC태그 활용 고령자 안전확보, 고령자 종합지원콜센터, 여성 의사 상담사업, 주소미상자에 대한 결핵대책 추진사업, 예방접종장려 추진계획, 건강운동지도사·건강운동 실천지도사의 취업조성사업, 지역육아 지원고용촉진사업, 친숙한 장소에서 일시 탁아사업, 출산육아 응원도우미사업, 다양한 육아인재 양성연수사업, 재취업 희망 여성 취직지원사업, 아동학대방지협력단 확보사업, 아동양호시설 등 지원향상사업, 모자가정의 취업지원강화사업, 형무소출소자의 일상생활지원사업, 생활보호제도의 원활한 실시지원사업, 장애인 지역생활지원사업, 고령자 생활지원활동사업, 특정건강진료 및 특정보건지도 종사자 확대사업, 간호보조 지원사업(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 운영병원), 영양사보조 지원사업(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 운영 병원)</p>			
농림수산업	도농교류추진에 따른 고용창출사업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교류추진을 위한 사무장 고용 - 농어가민박운영직원 고용 - 관광농원 등 운영직원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교류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바이오매스 유효활용위한 음식물쓰레기, 간벌재 수집·이용체제정비사업	내각부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매스 활용은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수집·운반 비용이 많이 소요 - 수집·운반에 실직자를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매스 활용체제 정비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대응 -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에 기여하고 농산어촌 활성화 도모
	<p>일자리 사례: 농업분야의 단기 고용창출사업, 원예산지 단기 고용확보·신규진입촉진사업, 도농교류 추진관련 신규고용창출사업, 경작포기지 개선사업, 바이오매스 활용관련 간벌재 등 수입이용체제정비사업, 간벌 및 간벌재 이용촉진, 선구적 사업연계·고용지원사업, 수출촉진컨설팅, 중소기업소매업자의 산지공동조달사업, 식품소매업무기능 강화, 사료용 쌀 생산 및 유통사업 지원사업, 농상공 연계설비정비사업, 국산조사료 촉진사업, 강한 농업만들기 교부금 활용 고용창출사업, 국산원재료 공급력 강화대책사업, 신토불이 모델타운사업, 퇴비유통·이용촉진지원사업, 전업농 경영다각화 및 경영규모 확대 추진사업, 농산어촌 지역 활력 발굴사업 관련 고용창출, 토지개발시설의 안전대책지원, 지역농산물 직판장 활용사업, 농지재생사업, 신규고용확대 어선리스사업, 오가닉 모델타운 지원사업, 농촌체험형 숙박시설 및 농가 레스토랑</p>			

분야	사업명	관련 부처	사업내용	기대효과
환경· 저탄소	주택용태양광 발전 도입 지원대책사업	경제산업성	- 주택용태양광발전시설 도입시 보조 실시	- 에너지안보 향상 - 저탄소사회 실현 - 보급 확대
	음식물쓰레기 에탄올화 모델사업	환경성	-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켜 에탄올을 추출하여 자동차연료 등으로 활용	- 자원의 유효활용 의식 제고 - 에탄올공장을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
	일자리 사례: 주택용 태양광발전도입 지원대책사업, 학교 등 태양광 발전이용설비 설치사업, 표류 및 표착 쓰레기 지역대책지원사업, 자연공원 청소사업, 해안환경 개선운동, 저탄소도시 관련 녹색일자리 창출사업, 탄소상쇄 추진지원사업, 농지농업용수 등 지역자원 확보사업, 농업촌락배출 오니 리사이클 촉진사업, 농업용조정저수지 수질보전활동 및 지원사업, 우량 어장보호 관련 감시강화사업, 환경생태계 보전활동, 숲 경관재생사업, 전기버스 개발보급, 지역순환네트워크 구축사업, 항만녹지 환경관리사업, 낚시진흥을 통한 지역활성화사업, 리사이클 정보센터 추진사업, 방치어선 대책추진과 관리위탁사업, 바다 환경보전촉진사업, 음식물쓰레기 에탄올화 모델사업, 이산화탄소 저감 단열 리모델링 보급촉진사업, 자연환경 개선사업, 등산로 등 위험장소 점검 및 안전대책사업, 야생동물의 생활환경피해대책, 외래종 방제를 통한 환경개선, 생물다양성 온난화영향 조사사업, 방치된 개 및 고양이 수용사업, 수변환경재생모델사업, 재사용 및 수선추진지원사업, 우량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파괴 우려 폐기물 사전철거사업, 병설처리정화조 전환추진 조사사업, 에코 투어리즘 추진, 쓰레기 투기 감시 및 방치쓰레기 수거사업, 환경인 재배출사업, 이산화탄소방출 감시단 파견사업, 환경보전사업자 투자촉진사업, 소수력 시민발전소 추진사업			
교육· 청년지원	학교서포터	문부과학성	- 지역의 기술자, 퇴직교원을 활용하여 수업실시 또는 교직원보조	- 교육효과 제고
	청년자립지원 원조사업	후생노동성	- 지자체가 청년자립지원을 위탁한 단체에서 실시하는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	- 세밀한 지원이 가능
	창업예비군육성사업	경제산업성	- 실직자 중 신규개업이나 벤처창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을 지역 중소벤처 기업에 취업시켜 경험을 축적	- 신규개업 및 벤처창업을 촉진
일자리 사례: 학교서포터, 청년자립지원 원조사업,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지원사업, 직업교육의 외부인재활용사업, 기업퇴직자 활용 교육지원매칭 추진사업, 지역의 IC태그 활용 향상사업, 대학의 지역공헌 및 교육기능 충실위한 업무지원사업, 대학의 지역공헌사업, 체험활동을 통한 지역활성화계획, 대인기피자 사회활동지원사업, 창업예비군양성사업, 지역 산학연계 직업교육지원 사업, 항구의 역사적 거리를 활용한 생애학습 충실화사업, 자연체험환경 학습사업, 차세대 폐기물처리작업원 육성사업, 방과 후 아동 교실				

분야	사업명	관련 부처	사업내용	기대효과
관광진흥· 지역산업	매력 있는 관광지 육성사업	관광청	- 농림수산산업이나 전통산업, 자연을 활용한 농사체험 등 매력 있는 관광지 육성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화재를 활용한 지역만들기사업	문화청	- 지역문화재 설명가이드 배치를 통해 문화재 이해 증진 도모	- 지역의 매력 이해 제고 - 지역 활성화
	일자리 사례: 매력 있는 관광지개발사업, 지역산업 판로확대 및 경쟁력강화, 지역철도 활성화와 지역자원 활용 사업 창출, 전통공예품의 후계자 육성 등 지원체계 구축, 쇼핑도우미 사업, 지역특산품사업 활성화, IC태그를 활용한 농산물 브랜드화, IC카드를 활용한 지역교류 촉진사업, 영상배급시스템을 이용한 지역정보발신사업, 웹통신기술을 활용한 예술활동촉진사업, IC카드를 활용한 관광지원사업, 지역문화재를 활용한 지역활성화사업, 중소기업소매업자 출장형 판매 촉진, 타 업종 경험을 활용한 어업진입사업, 수산가공유통 및 양식관련 고용창출사업, 산촌지역 신규사업창출, 그린 투어리즘 서포터인재활용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레스토랑운영지원사업, 산업유산을 활용한 과소지역 활성화사업, 인터넷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지원사업, 국제교류추진사업, 세토해(瀬戸内海) 국제학술제 협력사업, 중산간지역 비즈니스창출사업, 상점가 활용을 통한 생활형서비스 충실사업, 지역자원활용을 통한 신상품 안테나샵 개설, 산업관광 활용형 지역 만들기 사업, 철도원육성사업, 항공 활성화사업, 항공크루즈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사업, 항공의 매력을 활용한 관광진흥사업			
방송· 정보통신	학교업무의 정보화로 고용창출	총무성 문부과학성	- 성적처리 등의 학교업무 정보화 추진	- 학교업무 경감
	일자리 사례: 지상디지털방송대응촉진사업, 정보처리기술 관련 취업지원사업, 학교교무 정보화 통한 고용창출, 제조업 중사노동자및실직자의 정보통신 업종전환지원			
정주외국인 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	정주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일본어 교육 등 지원	문부과학성	- 외국인자녀를 대상으로 일본어 교육	- 외국인자녀 일본내 정착 지원으로 융화 제고
	의료통역자양 성확보사업	후생노동성	- 외국인의 병원진료시 언어면에서 지원	- 일본기업에서 일하는 재일외국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일자리 사례: 정주외국인 자녀에 대한 일본어교육 등 지원(문부과학성),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대학생활지원 보조사업, 정주외국인 자녀에 대한 일본어교육 등 지원(문화청), 의료통역자 양성 및 확보사업, 일본계외국인 고용기업의 자녀교육지원, 일본계외국인 일본어교육지원사업, 일본계외국인 일본어교육 및 직업훈련지원사업			

분야	사업명	관련 부처	사업내용	기대효과
방법·방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지도사업	경찰청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사건의 다발을 방지하기 위해 방법지도	- 범죄 발생 억제
	방재기상정보 활용체제강화 추진사업	기상청	- 지역예보를 실시함에 따라 정보전달체계를 정비	- 방재정보 공유
	일자리 사례: 계좌이체사기 방지 위한 주의환기 사업, 방화안전대책 보급개발사업,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지도사업, 통학로 등 방법활동, 유치소업무 지원사업, 공항 내 화물 지구 경비업무, 방재기상정보 활용체제강화추진사업			
문서전자화, 조사 등 행정사무, 정보제공	행정문서의 전자화	경제산업성	- 종이문서 등 행정문서의 전자화	- 행정문서의 검색기능 향상 - 종이문서 보관비용 절약
	국민건강보험 징수촉진·적용적정화사업	후생노동성	- 임시 위탁직원을 채용하여 호별방문을 통한 건강보험료 징수율 제고	- 건강보험료 징수율 제고
	일자리 사례: 전자행정 기반구축위한 행정문서 전자화, 토지대장 조사 작업, 국민건강보험 징수촉진 및 적용적정화사업, 건강질병대책 보급개발 및 상담사업, 브로드밴드 세미나, 개인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보급개발 지원사업, 지자체의 아웃소싱 관련 고용취업 창출사업, 공문서 기록관·도서관·박물관 소장문서 등 전자화, 브로드밴드 보급추진 의식조사, 유적출토품역사적 자료·민속 문화재 정리 및 공개를 통한 지역문화 진흥사업, 장기이식 및 골수은행 보급 개발등록추진사업, 지자체 의약품등 감시관련 업무 임시강화사업, 약물남용방지보급개발사업, 지자체 식품위생관련 업무 임시강화사업, 장애인 시설보급개발사업, 의료사무의 전산화사업, 국영토지개량사업의 행정문서 전자화지원사업, 농촌마을 배수시설개발보급사업, 농업수리시설관리관련 자료의 전자화사업, 해안보전시설의 현황조사사업, 지역정보정비사업, 지반(地盤)정보의 전자화, 지리공간정보의 전자화, 사방관련정보 개발사업, 사방정보전자화사업, 하천환경·방재정보 통지개발사업, 전국중소하천의 생태맵 작성사업			
기타	위법광고물 제거긴급지원	국토교통성	- 위법 광고물을 제거	- 경관 향상
	농업용저수지 긴급점검	농림수산성	- 노후화된 저수지를 점검	- 노후화된 저수지의 점검을 통해 위험도 사전 파악하여 사고 예방
	일자리 사례: 위법광고물 제거 긴급지원, 역주변 공터 등을 활용한 자전거 주차장 정비사업, 공립학교시설의 내진진단 및 보강설계사업 관련 긴급고용사업, 빌딩관리 인재육성 및 정착 촉진사업, 안심·안전한 수도서비스 확보사업, 식품위생관리자 자격취득 지원사업, 장애인등 피난지원사업, 농업용 저수지 긴급점검, 농촌마을 배수시설 유지관리 및 감시업무, 농업용 도로 유지관리촉진, 적정계량센터사업, IT컨설팅 활용촉진사업, 공설시험연구기관을 활용한 직업훈련 및 섬유산업관련 기업 소개사업, 외국기업유치촉진사업, 해안보전시설의 현황조사사업, 항만시설의 현황조사사업, 사방관련 유지관리작업, 동경국제공항 통일출입증 도입관련 관리업무, 공항 내 조류피해 방지업무			

자료: 日本 緊急雇用經濟對策實施本부의 「雇用對策事業例」(2009. 2.)를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다. 영국

- IMF의 최근 전망에 의하면 영국 경제는 올해 -2.9%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2008년 12월 실업률은 전년 동기간 대비 1.0%p 상승한 6.1%를 기록하여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최대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복지비용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실업급여 신청자는 2008년 11월을 기점으로 100만명을 초과함
 - 실업자 수는 작년과 비교하여 25만 7,500여명 늘어난 수치임
 - 11월 한 달 만에 실업급여 신청자가 7만 5,700여명이나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 신청자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9월 신청자 증가율이 4%, 10월 5.5%, 11월에는 7.6%를 기록했음
- 2008년 12월 고든 브라운 총리는 실업 극복을 2009년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고, 민간부문 소비 진작을 위해 한시적 감세정책을 실행하였음
 - 2008년 12월 정부는 소비 감소와 실업 증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13개월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7.5%에서 15%로 인하
- 한편 2009년 1월 향후 2년간 100억 파운드(한화 23조원)를 공공사업, 디지털 기술과 환경산업에 투자해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학교와 병원의 보수, 새로운 철도망 건설 등 공공사업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경기 후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건설업체를 지원하고자 학교 보수사업을 시행하여 30,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도로, 교량, 철도와 같은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보다 초고속 광대역망 (high-speed broadband) 등 디지털산업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을 중시함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개발, 풍력 및 조력발전 등 친환경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임

- 실직자를 위한 직업재활 교육비로 향후 3년간 1억 파운드(한화 2,300억원) 상당을 지출할 계획임(2008. 10월 발표)
- 정부 인력감축의 일환으로 계획했던 정부 운영 직업소개소인 ‘잡센터 플러스 (Job-centre Plus)’의 부분적인 폐쇄를 잠정적으로 중단
- 정부 주도로 공공 및 민간 기업들을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실업자들의 조기취업과 교육훈련 제공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함
 - 기존에 운영되던 장기실업자들을 위한 구직지원 프로그램인 ‘지역 고용파트너십’ (Local Employment Partnership)을 확대하여 ‘전국 고용파트너십’(National Employment Partnership) 프로그램 신설
 - 정부 주도로 국영우체국인 로얄 메일,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테스코 등 대기업들이 제휴하여, ‘잡센터(Job Centre)’에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훈련 제공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 그러나 영국의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책은 소비촉진, 교육훈련 강화와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인데, 이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
 - 한 해 동안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10만 개는 지난 한 달 새 없어진 일자리 수보다도 적다는 비판이 있음
 - 또한 개별적인 경기 부양책이나 취업 및 교육보조 정책들은 예산부족이라는 장벽에 막혀 있음
- 영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축소시키는 일련의 변화가 2010년 혹은 2011년에 일어날 예정인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이러한 제도 도입에 대해 노사정간 쟁점이 되고 있음²⁰⁾

20) 하세정, “2009년 영국노동시장 이슈,” 「국제노동브리프」, 2009년, 제7권 제1호, pp.46~53.

- 2008년 5월 영국의 노사정은 파견근로자들도 고용된 지 12주 후부터는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급여, 휴가 등의 복리후생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협약을 도출함
- 영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자 2008년 10월 유럽연합도 지침을 통과시켜 최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늦어도 2011년에는 효력을 발휘할 예정임
- 영국은 유연근로제(flexible working)의 정착을 위해 근로제 신청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약 4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유연근로제 신청권이 부여될 예정임²¹⁾
 - 정부는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만들어 유연근로제 확대를 정당화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그 의지를 관철시킴
 - 그런데 최근의 급격한 고용시장 악화로 주무부처인 영국 「사업·기업규제개혁부」(BERR)는 신청권 확대의 시행 시기를 재고하고 있음

21) 유연근로제란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출산육아의 중요성이 사회·문화적으로 부각되면서, 근로자가 가정생활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근로 형태와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임. 기존의 주간 전일제 근무와 비교하여, 근로자의 필요에 맞춰 근로시간, 장소, 방식 면에서 탄력적으로 변형된 조건을 갖춘 근로형태임.

V. 정책 제언

1. 긴급고용대책: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단기 일자리'의 양적 확대

-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대책은 먼저 대규모 실업방지를 위해 단기 일자리의 수를 양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함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대규모 실업사태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단기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실업해소대책 추진
 - 일본의 경우,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발표한 200여개의 「긴급 고용대책 사업례」를 보면, 재정을 통한 일자리 제공은 대부분 고령자 돌봄서비스, 어린이 보육, 경작지 잡초제거나 벌채, 방법서비스 등 단기 일자리가 주를 이룸
- 2009. 1월말 기준으로 일자리 관련 예산사업 집행실적은 계획대비 154% 수준 이므로, 사회서비스일자리 등의 추가적 지원을 위해 재원확충이 필요함
 - 1월중 일자리사업: 배정액 0.5조원, 집행액 0.8조원²²⁾
- 재원확충 시, 기존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도입이 고려될 수 있는 일자리 사례
 - 청년 일자리: 「공공기관 청년인턴제」(행정인턴, 2009년 신규사업), 가정보육교사 (법률안 계류중), 교사인턴(보조교사제, 신규도입 검토 필요)
 - 경기도는 영국, 프랑스 등의 제도를 참고하여, 2008. 1월부터 전문보육교사가 직접 가정방문하여 36개월 미만 아동 대상으로 1:1로 보육하는 가정보육교사 제도 시행
 -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보조교사제 도입, 산학겸임교사인 영어회화 전문강사 확대 등
 - 중·장년층 여성의 주요 일자리인 돌봄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대
 - 최근 50대 여성 취업률 증가는 이들이 사회서비스일자리에 상당히 참여함을 반영하므로, 비록 괜찮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가장의 실업을 대체하는 효과와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에도 기여

22) 집행률: 전직실업자취업훈련지원(138%), 창업활성화용자(143%).

- 직접적 일자리 제공 효과가 큰 산림청 소관 일자리사업, 소외지역이나 취약계층 대상의 문화예술 공연 및 관람기회 제공 등 문화관광 분야 일자리 확대
 - 숲가꾸기, 산림서비스, 예술강사, 도서관 연장운영, 공공미술프로젝트, 문학창작지도, 디지털방송인력 및 디자인문화인력 양성 등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일자리 제공 효과가 큰 노인일자리사업(1,166억원)은 공공분야의 일자리보다 실질적인 소득창출효과가 큰 민간분야에서 일자리 비중을 증가시킬 필요 있음
 - 동 사업 지원대상자 수 16만명 중, 공공분야 일자리 지원대상자 수는 13.8만명(86.3%), 민간분야는 2.2만명(13.7%)임
- 단, 한시적으로 확대된 사업은 향후 경기호전 또는 목표충족 시 다시 본 위치로 환원(reversible)될 수 있도록, 예산사업 ‘일몰제’ 적용방안 검토
-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예산이 확대된 각종 정책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경기회복 후에도 예산이 감액되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음
-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사업 외에도, 정부·공공기관·민간 기업들의 협력을 통하여 단기일자리 공급원인 우체국, 대형 슈퍼마켓, 중소기업 등의 구인정보가 구직자에게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일자리와 구직자 간 불일치 현상(mis-match)에 대한 해소책 마련
- 영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국영우체국인 ‘로얄 메일’과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테스코’ 등 대기업들이 제휴하여, ‘잡센터(Job Centre)’에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실업자 조기취업과 교육훈련 제공을 위한 공동 노력 합의
 -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일보와 기업은행 등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중소기업 전문무료 취업사이트 ‘잡월드’(www.ibkcsjob.co.kr)를 운영하는 등 ‘청년 취업 1만명 프로젝트’ 시행
- 일자리와 관련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정부에서 준비 중인 제·개정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효과적으로 지원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2009. 2.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여옥의원 대표발의 2008. 11. 6) 등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임
- 특히 현재 계류 중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의원 대표발의 2008. 10. 6)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 재정지출의 방향성 정립을 통해 분야별로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는

첫째, 당면한 위기상황에서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을 주 대상으로 적정규모의 재정을 시의성 있게 투입하여 일자리 직접 지원사업 및 관련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둘째, 중장기적으로 향후 한국사회와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출산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양육 및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세계 경제운용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여 새로운 성장모델을 선점함으로써 지속적 일자리 창출이 담보되도록 하는 방향의 재정투자 필요

- 일본의 대규모 재정투자 경험에서의 시사점은 “공공투자사업이 미래를 위해 유익함을 창출할 때에 비로소 성과 있는 투자로 평가된다”는 사실임
 - 일본은 1990년대 초에 시작된 불황 극복을 위해 지방 SOC 확충 등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장기간에 걸쳐 분산 지출하면서 재정투입 효과가 희석되어 약 10년간 장기불황이 지속되었다고 지적²³⁾

23) 일본은 장기불황이 시작된 1991년부터 2008. 9월까지 총 6.3조 달러를 건설관련 공공부문에 투자하였으나, 국가부채만 증가되었을 뿐, 일자리 창출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뉴욕타임스, 2009. 2. 6일자 인터넷기사).

- 미래에 나타날 효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 SOC를 통한 일자리 효과는 건설 공사 시에만 국한되는데, 일본 시마네현의 경우 대규모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good jobs)는 교육, 해양관(Aquarium) 건립²⁴⁾ 등의 투자를 통해 창출된 것으로 평가
- 최근 각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재정지출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취업 및 직업훈련 교육보조, 경기후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학교와 병원 보수사업 등의 시급한 대책과 더불어, 국가의 잠재적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된 분야를 선택하여 투자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미국의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전통적인 건설분야 투자에 더하여, 에너지 효율화, 과학기술, 의료, 교육 분야의 투자 강화가 주를 이루는데, SOC 투자도 신규사업보다 노후화된 도로·교량 재건 및 환경복원 지원에 초점을 두며,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보험 및 의료지원 확대 등 경제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주력
 - 일본의 경우, 2008. 12월 발표된 「경기대책」 중 「고용대책」을 보면, 고용유지, 재취업지원, 취업 내정자 취소방지 대책, 고용보험료 인하, 고용보험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되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용기회를 확대시키고자 「10개 분야 200여개 고용대책 참고사례」를 개발하여 지자체에 전달하였는데, 이는 주로 돌봄서비스(수발), 의료, 교육, 환경·저탄소, 관광진흥 분야 등의 일자리 포괄
 - 영국의 경우, 실업극복을 2009년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소비 진작을 위한 감세 정책, 실업자 조기취업을 위한 「전국 고용파트너십」 프로그램 확대, 직업훈련 제공 등을 위한 투자확대 및 공공과 민간의 공동 노력,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초고속 광대역망에 투자하여 디지털산업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

24) 일본 시마네현의 경우 그간 추진된 도로, 교량 등 많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시마네현 연간 예산의 2배인 110억불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많은 사업 중 하마다시에 건설된 해양관사업 등은 이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도시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줌.

3. 교육·녹색성장 분야 등에 대한 투자로 '좋은 일자리' 창출기반 확충

- 급속하게 진전되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하자면, 양질의 인적자원 육성,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 의료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선진국의 재정지출 확대방안에서 교육분야, 에너지 효율화, 과학기술, 디지털산업 등에 대한 투자 주목됨
- 정부가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녹색 뉴딜사업'의 경우 11개 부처·청이 수행하므로, 동 사업 추진 시 부처별 연계사업의 역할분담, 적절한 훈련프로그램 마련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일자리 창출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임
 - 정부는 부처간 중복사업 조정과 연계사업 간 우선순위 설정 등을 위해 이를 총괄 조정하는 부처를 선정하고, 각 부처는 신규사업 발굴 및 선정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역할 분담 필요
 - 취업 취약계층을 '녹색 일자리'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훈련프로그램 운영이 중요²⁵⁾
 - 선진국들은 환경·에너지 분야 투자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성 있는 일자리 창출 모색
 - 미국은 「2007 녹색 일자리법」(The Green Jobs Act of 2007)을 통해 국가에너지정책으로 인해 취업에 영향을 받은²⁶⁾ 근로자, 퇴직군인, 실업자, 저소득층, 전과자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산업 관련 기술훈련 실시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중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정책추진 방향과 부합하는 재원배분 필요

25) Pinderhughes, R., *Green Collar Jobs*, The City of Berkeley Office of Ener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007.
26) 국가에너지 정책으로 새로운 재생에너지 기술이 개발될 경우,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광업 인력과 재생재 수거 관련 일자리 수가 감소되는 사례를 지적할 수 있음(McEvoy, D. C. & J. W. Longhurst, *Assessing the Employment Implications of a Sustainable Energy System: A Methodological Overview*, Geographical & Environmental Modelling 4(2), 2000).

- 일례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1,140억원)에 대한 투자보다는,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421억원)과 폐기물에너지화사업(17억원)에 대한 투자확대가 바람직할 것임
 - 폐기물 관련 환경정책의 경우, 폐기물의 매립·소각에서 자원화·에너지화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폐기물에너지화사업에 대해 동시 다발적으로 투자가 진행됨으로써 일자리 창출효과가 반감될 우려 있음

□ 개별사업의 ‘일자리영향평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구체화

- 대규모 재정사업이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고용창출효과에 대해서는 이를 여러 측면에서 사전 검토하여, 고용시장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에 따른 사업별 실제 고용창출 효과를 보다 정교하고 예측성 있게 판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일례로 '녹색 뉴딜사업'의 고용효과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등에 토대를 두고 추정

4.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 노사의 일자리 나누기 실천 노력이 확산되도록 제도개선과 더불어, 재정 지원 필요

- 현재 임금삭감이나 근로시간 단축, 직무분할 등을 통한 노사의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하는 사업은 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583억원),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35억원), 교대제전환지원금(61억원) 등 3개 사업에 불과
 -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 완화와 지원금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사업비 증액 검토
 - 위 3개 사업 외에도,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사업의 발굴 필요
-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공공부문의 사례가 민간부문에 파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있음
 - 정부는 일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금융공기업 등 100여개 공공기관 신입사원 초임을 기관별로 최대 30%가량 삭감하고, 삭감 재원을 인턴 고용확대 등에 사용할 계획²⁷⁾

□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사례,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 등이 확산되도록 지원

○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고용유지 사례

- **가온전선**: 노사합의로 랜케이블 제조라인 38명을 대상으로 교대제 전환(3조 3교대 24시간 → 2조 2교대 16시간)을 통한 조업시간 단축으로 고용유지 노력, **하이닉스**: 문 닫은 3개 공장 직원 1,000명 전환배치, 신규채용 억제, **유한킴벌리**(1993년 시작, 외환위기 당시 확대): 정리해고 대신 기존의 3조 3교대제를 4조 3교대제로 변경(고용증가, 생산성 향상)

○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

- **비료제조업체 KG 케미칼**: '05년 임금피크제 도입, **현대 중공업**: 정년(58세) 퇴직자 중 88%인 513명을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임금은 종전의 80%, 근로복지는 동일), **하나투어**: 근무일수 줄여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년 65세까지(주 3~4일 근무), **린나이 코리아**: 임금피크제 도입해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

□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는 법률안의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동 입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이며 적시성 있는 제도적 지원을 도모하도록 함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유지 및 신규고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전환시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정부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 완화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자리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2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9. 2. 16.

5.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취약계층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고용보험(실업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실업급여 임의가입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국회에는 군인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과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완화 및 개별연장급여 수급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음
 - 미국의 경우 실업급여 수혜기간을 추가로 최대 33주 확대하고, 현재 주급여 300달러인 실업급여를 추가로 25달러 증액할 계획
 - 취약계층에 대한 개별연장급여 수급기간 확대와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가입 등을 허용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고지원 등 사전대책 수립 필요
 -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국고지원은 2009년 200억원(모성보호지원)에 불과
 - 미국의 경우 실업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주정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실업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은 최근 실업자 증가로 인한 지출확대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동 계정 사업인 ‘고용정책·직업훈련’사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따라 국민일반까지 포괄하므로 국고지원 확대 필요
 - ‘고용정책·직업훈련’사업을 위한 국고지원은 7,000억원 규모로, 고용보험기금의 동 계정에서 지출되는 사업비(1.8조원)의 약 1/3에 불과
- 새터민 등 취약계층이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훈련에 전념하여 동 훈련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생계유지비 지원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음

- 훈련기간 중 생계유지 지원사업은 노동부의 「신규실업자등 훈련생계비 대부」(2009년 신규, 240억원)가 있으나, 동 지원대상은 신규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등에 국한되며, 새터민과 자활대상자는 제외
 - 새터민 등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사업은 훈련기간 동안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훈련 중도탈락율이 높음

-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각종 급여비 지출 증가와 관련해서는, 집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복지전달시스템의 비효율을 제거하여 재정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전반적인 개선 필요
 - 복지재정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여러 부처에 걸쳐 각종 자격급여 및 복지서비스 종류가 늘어나면서, 복지서비스 수급과 관련된 비효율, 부조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는 1차 사회안전망으로 고용보험 등 8종의 사회보험을 통한 급여와 관련 사업이 있으며, 2차 사회안전망은 국민기초생활급여 등 공적부조와 각종 사회 복지서비스, 그리고 3차 사회안전망인 긴급구호 등이 있음²⁸⁾
 -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경우, 구직자에 대한 대인 밀착서비스가 미흡하여, 구직자 수 대비 취업률이 25.5%(2007년)에 불과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취업기관 난립으로 일자리 정보가 비효율적으로 제공
 - 특히 고용보험 관련 부정수급, 국민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각종 돌봄서비스 등의 중복 수혜 문제에 대해서는 전달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 적정수준의 관리 인력 배치 및 효율적인 급여비 지급방안(전자 바우처 등) 마련 등을 통하여, 낭비적 지출을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이 수급자격이 있는 대상자에게 지원되도록 재정사업의 성과를 제고시키는 전반적인 개선 필요
 - 일례로 구직·구인,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경우, 수요자 중심의 원 스톱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공공 고용지원 서비스기관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통합 필요

28)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생계급여 등 각종 공적부조와 복지서비스사업도 100여종에 이룸.

참 고 문 헌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자료」, 2009. 1. 29.
- 기획재정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장관 취임 기자회견 자료, 2009. 2. 10.
- 도건우 외 2인, 「녹색뉴딜사업의 재조명」,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691호, 2009. 2. 11.
- 정부 11개 부처 합동,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자료, 2009. 1. 6.
- 정상훈, 「청년층 고용현황과 일자리 창출」, 국회경제위기대응팀 발간시리즈 제5호, 대한민국 국회 2008. 12.
- 차학봉, 「일본에서 배우는 고령화 시대의 국토」, 삼성경제연구소, 2006.
- 통계청, 「2009년 1월 고용동향」, 2009. 2. 11.
-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제7권 제1호, 2009.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 日本 緊急雇用・經濟對策實施本部, 「雇用對策事業例」, 2009. 2.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ost Estimate-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2009. 1.
- McEvoy, D. C. & J. W. Longhurst, “Assessing the Employment Implications of a Sustainable Energy System: A Methodological Overview,” *Geographical & Environmental Modelling* 4(2), 2000).
- OECD News Release, *OECD Unemployment rate rises to 6.8% in December 2008*. 2009. 2. 9.

Pinderhughes, R., *Green Collar Jobs, The City of Berkeley Office of Ener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007.

Romer, C., & Bernstein, J, *The Job Impact of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 2009. 1.

The New York Times, *Japan's Big-Works Stimulus Is Lesson for U.S.*, 2009. 2. 6(www.nytimes.com).

The New York Times, *As Layoffs Surge, Women May Pass Men in Job Force*, 2009. 2. 6(www.nytimes.com).

작성자 명단

작성 부문	성 명
총괄 · 조정	김호성 예산분석실장 박용주 예산분석심의관 박인화 사회예산분석팀장
I. 총론	김대철 예산분석관 박인화 사회예산분석팀장
II. 일자리 예산과 문제점	이진우 예산분석관
III. 일자리 관련 법률안 현황	이형진 예산분석관 강상규 예산분석관 유인규 예산분석관
IV. 해외 정책동향과 시사점	김봉주 예산분석관 서세욱 예산분석관 김성은 예산분석관
V. 정책 제언	박인화 사회예산분석팀장 이진우 예산분석관 김대철 예산분석관
편집	정선미 사무보조원

일자리 정책 : 예산과 입법과제

발 간 일 2009년 2월 26일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팀
발 행 인 신 해 룡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788·3771
인 쇄 처 성지문화사 (TEL 02·2273·5090)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팀** (TEL 02·788·3771)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ISBN 978-89-6073-180-6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09